

이것만은 바꾸자 ! 이것만은 밝히자 !

19대 국회 2012년 입법과제 및 청문회과제

2012. 6. 12

차례

19대 국회에 바란다	5
-------------	---

1부 . 19대 국회에서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45대 입법과제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실현>

1.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
2. 중소기업 생존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3
3.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15
4.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	17
5.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대항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20
6. 부자 증세와 조세정의를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22
7.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형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3
8. 상장주식 및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과 파생금융상품 거래 과세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	25

<민생 살리기>

9.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26
10. 서민주거안정과 주거정의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8
11.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를 위한 보금자리특별법 전부 개정	30
12.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의 구현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32
13.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34
14. 이자폭리 및 대부업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37
15. 채무자 방어권 확대·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39

16.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41
17.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44
18.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안정적 실시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46

<복지 확대와 노동기본권 확보>

19.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48
20.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52
21. 정리해고 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55
22. 질병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57
23. 실업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59
2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62
25.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64

<민주주의 기본권 확보>

26. 투표권 보장, 정책 선거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66
27.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터넷실명제 및 통신심의 폐지	69
28.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명예훼손·모욕 관련 형법·민법 개정	71
29.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	73
30.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보장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75

<권력형 비리 근절과 새 정부 투명성 확보>

31. 검찰견제와 부패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77
32.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80
33. 이해충돌방지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82
34. 공익제보자 보호강화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85
35. 예산낭비 방지와 환수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88

36. 알권리 확대·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90
37. 기록물의 체계적관리·무단폐기 방지를 위한 기록물관리법 개정	93
38.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95

<남북 관계개선, 군개혁, 외교안보통상 민주화>

39. 국회 검증 없이 취해진 5·24 조치 해제 촉구 결의	97
40.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99
41.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	101
42.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완전 철수(연장 동의안 부결)	103
43. 국회의 파병 사전동의권 훼손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 개정	105
44.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107
45. 통상협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위한 통상절차법 개정	109

2부 . 19대 국회 2012년 청문회(국정조사) 7대 과제

1. 청와대·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 청문회	112
2.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문책을 위한 청문회	117
3.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	120
4. 저축은행 사태 재발방지 및 금융당국의 정책책임 추궁 청문회	122
5. 론스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125
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실효성 가리기 위한 제주해군기지사업 국정조사 실시	128
7. 천안함 침몰 의혹 규명을 위한 초당파적 진상조사	133

※ <비고> 6/4일 참여연대의 '19대 국회에 바란다' 기자회견에서는 43대 입법과제가 발표되었으나 민생 살리기 과제 중 '15. 채무자 방어권 확대·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제와 16.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과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두 과제가 새롭게 추가되어 국회에 전달될 참여연대 자료집에서는 45개 과제가 됨.

19대 국회에 바란다

19대 국회의 임기가 2012년 5월 30일 시작되었습니다. 19대 국회는 지난 18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민생안정을 이루고 경제민주화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추진하며 한반도와 국제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입법과제로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실현', '민생 살리기', '복지확대와 노동기본권 확보', '민주주의 기본권 확보', '권력형 비리 근절과 새 정부 투명성 확보', '남북관계 개선·외교 안보통상 민주화' 등 6개 분야에 걸쳐 45대 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개원과 동시에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7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과제들이 2012년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민생문제 해결은 19대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비싼 등록금과 주거비, 가계부채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소한의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들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비롯하여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장기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를 위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주요한 과제입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자폭리 및 대부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채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민생안정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기초적 제도개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이 누리는 특권을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의 사업영역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당한 하도급 횡포 근절과 중소기업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조세정의와 더불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조세감면제도를 개혁하고, 부자 증세를 위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맞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도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 확대와 노동 기본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빈곤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질병인정 기준을 완화하며,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실업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민주주의 기본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후퇴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것은 19대 국회와 차기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며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주주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

제는 투표권 보장과 정책선거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입니다. 이는 특히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참정권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 및 통신심의를 폐지하고, 국가 및 공무원 등 공적 영역에 있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새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측근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은 정부가 반부패과제를 백안시하고 투명성 제도를 후퇴시켰기 때문입니다. 2013년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19대 국회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권력형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정치자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과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익제보자와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를 위해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하고 국민소송법을 제정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부기록물의 무단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과제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외교안보통상의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없이는 민생도 경제도 민주주의도 위태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19대 국회의 과제는 국회 검증 없이 취해진 5·24 대북봉쇄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19대 국회는 국제 평화를 위해서도 기여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한 오쉬노 부대는 완전히 철군하고 정부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이를 부결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의 파병 사전동의권을 훼손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FTA협정 비준과정에서 문제가 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통상협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통상절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7대 현안에 대한 청문회(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다뤄야 할 긴급 현안을 7대 청문회(국정조사) 과제로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 청문회와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기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2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쌍용차 정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도 나서야 합니다.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 규명과 론스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도 개최하여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또한 정부의 공사강행과 주민의 반대로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천안함 침몰 사건의혹도 초당파적 진상조사를 통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에서 시급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6개 분야 45대 입법과제, 7대 청문회(국정조사) 과제가 19대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입법청원하는 것은 물론, 각 정당 및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토론하며 함께 대안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부

19대 국회에서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45대 입법과제

경제 민주화와 조세 정의

1.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1) 개요

-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보호를 위해, 말로만 하는 상생이나 동반성장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영역으로의 진출을 규제하고 이미 진출한 경우 그 퇴출을 시행할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제정.

2) 제안 설명 / 취지

- 이명박 정부는 민간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 및 품목을 선정하여 대기업으로 하여금 그 진출을 자제하고 이미 진출한 적합업종에서는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중소기업 보호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 할 것임.
- 따라서 과거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와 같이 정부가 대기업의 진출 없이도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제정 내용

- 이 법은 중소기업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여 중소기업 보호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 1조).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보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보호·육성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안 제4 조)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지하여야 함(안 제5조).
-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개월 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한 경우 중소기업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연기하거나 일부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하며 그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사항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대기업 등이 영위하고 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중소기업인에게 이양한 경우에는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고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기금을 설치함(안 제10조).

-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사업의 연기 또는 사업의 일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

4) 소관 상임위

- 지식경제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2. 중소기업 생존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 개요

- 중소기업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재벌슈퍼마켓)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2) 제안 설명 / 취지

- 유통법이 개정되면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까지 범위에서 제한, 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내용이 미흡하여 영업 제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근본적으로는 대형마트와 재벌슈퍼마켓(SSM)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되지 않아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대형마트와 SSM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전국의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재벌슈퍼마켓 신규 진출 시에서는 허가제를 적용해서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임.

3) 개정 내용

- 현행 유통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만 규정하고 있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이내에 불과함. 이것마저 대규모점포 등은 반발하고 있으나 기왕 도입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제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로 강화하고 영업시간도 저녁 9시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해야 할 것임. 이 같은 조치는 중소기업 생존권 보호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 등의 야간 및 휴일 노동 근절, 대규모 에너지 낭비 사업장에서의 에너지 절약이라는 공공적 목적도 함께 있는 것임(제12조 2 개정 사항)
- 쇼핑센터와 하나로마트(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등)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삭제하고,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전통시장의 주요 품목인 1차 식품에 대한 품목 규제 기준도 적용.(제12조 2 개정사항)

- 영업품목의 경우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당시 GATS 하위분야에서 유제품 및 계란, 육류 및 육류 제품, 빵 및 제과, 사탕류, 캔 음료, 담배, 기타 식품 등은 개방되지 않은 77개 분야에 포함돼 있으므로 품목제한이 충분히 가능하고, 순대, 떡볶이, 치킨 등 중소기업 형 조리식품 등은 판매 금지해야 함.(신설 사항)
- 용도별 입점제한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 개설시 용도별로 입점규제)을 신설 : 현재 유통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등에 대해서만 등록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은 교통혼잡, 소음 등 주변 생활환경에 지장과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설지역 중소기업의 생존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함.(신설 사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 개정 사항)
- 또 허가제와 함께 개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주민설명회와 주민의 이의제기 과정을 사전에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기습입점’으로 인한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함.(신설 사항)

4) 소관 상임위

- 지식경제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3. 대중소기업의 진정한 상생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1) 개요

- 대형마트와 SSM이 기습입점을 시도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생계가 크게 위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여 사업조정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 개정이 시급함.

2) 제안 설명 / 취지

- 중소기업이 대형마트나 SSM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그 SSM이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면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사업개시의 일시정지, 사업개시의 연기를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권고내용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 후에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SSM 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일시정지, 사업연기 권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 공표 외에 사업개시를 중단하게 할 강제조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 SSM의 지속적인 영업행위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음. 때문에 대형마트와 SSM은 주민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단 개점하고 보자, 개점하면 아무도 못 막는다'는 방식으로 확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업조정 테이블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음.
- 사업조정 대상 가맹사업자의 범위를 점포개업에 드는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제한하고 있어서 대기업이 점포 개점비용의 49%를 부담하는 형식 등으로 개점하는 경우는 사업조정을 할 수 없음. 이처럼 대기업 지분이 51% 미만인 가맹형태의 근린상권 소매점은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사업조정의 틈새시장 전략으로 가맹점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함.
- 사업조정 과정 중에 행해지는 경미한 권고 내용에도 문제가 있음. 보통 슈퍼마켓 주인이 SSM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는 탓에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담배·쓰레기봉투 판매금지, 1만원 이하의 배달금지 등의 경미한 수준의

조정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생법상의 사업조정제도의 내용을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진정한 상생의 취지에 걸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개정 내용

- 대형마트와 SSM의 개점 시도 시, 개점의 일시정지 권고를 넘어 일시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또 다양한 형태의 편법 가맹점과 슈퍼형 편의점을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제32조 개정사항)
- 현재는 사업개시 이전이나 개시 후에는 90일 이내로 되어 있음. 상인들이 그 피해를 인지한 시점이 3개월이 지난 경우에 피해 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사업조정 신청 기한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할 것임. (제32조 개정사항)
- SSM에 대한 사업조정권한 일체를 지자체로 이관 : 현재는 SSM의 경우에 1단계 시도지사 사전자율조정, 2단계 중기청 강제조정, 3단계 시도지사 권고 및 명령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역 경제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로 그 과정과 권한 전체를 위임하도록 함.(제32조 개정사항)

4) 소관 상임위

- 지식경제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4.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

1) 개요

- 재벌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2) 제안 설명 / 취지

-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체는 2006년 말 3,022,053개로 총 사업체의 99.9%를 달하고 있고 종업원수는 12,445,088명으로 87.5%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사업자 수나 고용인원 등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관행 때문임.
- 수요 독점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교섭력의 차이와 그에 따라 거래상의 불공정성에 기인하는 잘못된 하도급거래라는 왜곡된 하도급 구조관행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대기업의 부담해야 비용을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대기업으로 이전되고 있음. 이러한 왜곡된 거래구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고용 없는 성장을 가져오고 있어서 시급히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임.

3) 개정 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제도의 실효성 제고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에 의해 권고되는 것에 그쳐 현재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원사업자로 하여금 공정위에 정기적(6개월 내지 1년)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내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게 하고, 공정위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게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함으로써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을 촉진토록 할 필요가 있음.

- 납품단가 공정 결정제도 : 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하도록 하는 '납품가격 연동제'의 도입
- 배상명령제도 도입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손해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간이 신속하게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의(害意)를 가지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적 손해를 가한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사업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3배의 범위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전속적 고발권의 폐지 : 공정위의 전속적 고발권을 폐지해야 함.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것은 범죄의 적발과 제재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고발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공정하게 행사하여 피해자 구제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가 된 것이나 현실적으로 공정위는 지금까지 2002년에 1건의 고발권을 행사한 외에는 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어 그 신뢰가 상실되고 있음. 국민의 재판권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하도급법 피해자와 다른 법 관련 피해자간의 평등권 침해 소지를 없애는 한편, 하도급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 :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경쟁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임)

4)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시민경제위원회 02-723-5052

5.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대항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1) 개요

-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와 담합,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2) 제안 설명 / 취지

- 담합은 사업자 혹은 기업이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함께 결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켜가야 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는 주범임. 특히 최근 재벌·대기업의 담합은 장애인·택시 사업자가 이용하는 LPG부터,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소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에 있음.
- 담합 뿐만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독점과 불법행위에 대해 대항하고 다종다양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3) 제정 내용

-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 등으로인 인한 광범위한 소비자의 피해는 소비자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비용과 장시간 소송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받기에는 소규모이어서 이러한 흠어져 있는 다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 1인 이라도 전체 소비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전은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는 내용으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담합 등 불법행위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3배 범위 내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이 필요가 있음.
- 다수의 피해소비자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송비용 지원 등 소송지원·구제를 위한 규정을 명시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시민경제위원회 02-723-5052

6. 부자 증세와 조세정의를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1) 개요

- 부자 증세와 조세정의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개정 및 신설.

2) 제안 설명 / 취지

- 국내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뒤쳐져 있고, 향후 복지재정 수요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
- 개인소득과 기업소득의 양극화가 커지는 한편,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실효세율 역시 낮은 편에 속해,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이들 부자들에 대한 증세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조세정의와 이른바 '큰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할 필요가 있고, 이는 세계적인 '버핏세' 신설 움직임을 통해서도 그 정당성이 입증됐음.

3) 개정 내용

- 소득세제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이하 35%, 1억 2,000만원 초과 42% 세율 부과 (소득세법 제55조)
- 법인세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2%,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25%, 1000억원 초과 27% 신설(법인세법 제55조)

4)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7.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형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 개요

-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인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 제안 설명 / 취지

-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제가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과 조세정의의 구현이고, 이를 통한 국가재정 건전화와 복지재정 마련일 것임. 그럼에도 오히려 재벌 대기업은 각종 특혜와 국가 차원의 편향된 지원 속에서 그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계속되고 있음.
- 실제로 2010년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각각 15.1%와 16.5%로 측정되어 명목 법인세율인 2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런 상황에서 누가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겠는지 이제는 철저히 성찰하고 제대로 된 조세 개혁과제를 도출해야 할 때가 됐음.
- 즉, 능력과 소득에 따라 조세부담이 이뤄져야 함에도 각종 조세감면 혜택으로 인해 오히려 재벌 및 대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임. 이를 위해 조세감면 특혜 축소 및 신설 감면 제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여 아무리 조세특혜 또는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일정 이상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

3) 개정 내용

-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기업은 15%를(기존 규정은 11%),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은 20%(기존 규정은 14%)를 최저한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4)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8. 상장주식 및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과 파생금융상품 거래 과세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

1) 개요

-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상장주식 및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과세 확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새로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개정

2) 제안 설명 / 취지

- 과거 자본시장육성을 위해 비과세 정책을 실시하였던 금융자본이득 과세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비해 심각한 과세불공평을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현재 이런 정책을 지속할 명분은 사라졌음.
- 현행 소득세법상 대주주와 장외거래 등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데, 3천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남긴 일반투자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형평성 추구, 과세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 파생금융상품 역시 양도소득세 및 거래세를 부과하여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세수 증가에 기여하며 투기 과열현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함.

3) 개정 내용

-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 3000만원으로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조항을 둠.(소득세법 제94조)
-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10000분의 1로 함(증권거래세법 개정)

4)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민생 살리기

9.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1) 개요

-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고(반값등록금 실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

2) 제안 설명 / 취지

- 대학등록금은 매년 물가 인상률의 2~3배로 올라 이른바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돌입했음. '등록금 천만 원'은 중산층도 3~4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금액임.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가 필요함.
- 2011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학등록금이 13% 정도 뺏기기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0년 기준 사립대 적립금이 10조원을 돌파하면서 대학의 등록금 책정 및 재정,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OECD 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 재정은 GDP 대비 1.0%인 반면, 우리나라는 0.6%로 절반 수준에 불과함.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3) 제정 내용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국내총생산(CDP)의 1.0%까지 확보해 고등교육기관의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지급되며, 당해 연도 등록금표준액과 학생 수를 고려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지급함.
- 교부금은 각 교육기관의 신청을 통해 이뤄지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등

등록금상한제, 교부금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및 회계감사, 법인전입금 규모 등에 대해 '재정교부금 교부협약'을 체결해야 함.

- 경영이나 법정 재단전입금의 전입이 부실한 경우 등 정당한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다만 학교의 회계, 인사, 재정 교부금 협약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음.
- 교부금 교부협약을 체결한 대학은 등록금표준액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 시설, 교원 기준을 충족하고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록금표준액의 1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받을 수 있음.
- 등록금표준액은 직전 3개 연도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경제사정,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함. 전공 계열별로 등록금표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가장 높은 등록금표준액이 가장 낮은 등록금표준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교부금을 교부받은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하여 교부금에 관한 회계 보고 의무와 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함.

4) 소관 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10. 서민주거안정과 주거정의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 개요

- 전월세난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

2) 제안 설명 / 취지

- 최근 몇 년간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서민가계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서민가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그럼에도 주택 임차 수요에 비해 전월세 시장의 안전판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부 보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4.7%에 불과함. 이전부터 정부는 공급확대를 이야기해왔으나, 정부의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전월세 시장은 급등현상을 보였으며, 정부 보유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 10%를 달성하는 데에도 적지 않는 시간이 소요될 것임.
- 또, 전월세 시장의 급등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와 임대료 상한 정책의 선진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임.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상한율을 법정화하는 한편, 임대인에게도 일정한 경우 계약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1회에 한하여 행사하도록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함께 임대인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현재는 시행령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을 연 1할 4푼으로 정하고 있으며, 평균 연 1할의 비율에 달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의 1.5배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3) 개정 내용

-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하지 못하도록 하되,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 평균한 이자율의 1.5배의 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의 2)
- 임차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제2항에 반하여 임의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2항 신설)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11.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를 위한 보금자리특별법 전부 개정

1) 개요

- 분양주택 위주이던 일부 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특별법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 특별법(가칭)으로 (전부)개정.

2) 제안 설명 / 취지

-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켜야함. 그러나 현재 정부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통해 분양위주의 주택공급 사업을 하고 있음.
-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긴급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공급되는 주택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나, 정부는 공공·민간 분양을 실시하여 그린벨트 해제의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고 있음.
- 이마저도 분양주택에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자 정부는 5.10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해 주고 있는 바, 이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몰각하는 것임.
- 정부가 (후)분양공급하고 있는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였다면, 서민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였을 것임.

3) 개정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전부 개정
- 국가의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분양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뚜렷한 정책적 목표로 해서 이를 법률에 규정함.

4) 소관 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12.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의 구현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1) 개요

- 개별 법령, 지침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거복지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하나의 법체계로 묶어 제정하여, 주거복지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사업이 실시되도록 함.

2) 제안 설명 / 취지

- 현재 주택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주택종합 기본계획에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나, 주택정책이 초점이 주택공급에만 맞추어져 있다 보니 주거복지와 관련한 내용은 사실상 포함되지 않고 있음
-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공약을 내걸고 있으나 이러한 공공임대공급정책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주거복지의 핵심내용으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도시재개발 등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사업에 있어서도 주택가격의 시장상황에 따라 대규모로 지정되었다가 풀리는 등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계획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공공임대주택 공급재정, 도시재생 지원재정, 임대료 지원재정 등이 매년 들쭉날쭉하여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지 못하여 주거복지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임대료 지원, 도시재개발의 지속적 추진,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 주거복지 재정 마련 등을 위하여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임대공급자격, 임대료 지원자격, 주택개량 신청권 등 주거복지 수급자의 지위를 정부와 지자체의 시혜적 대상에서 주거복지 수급권의 권리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 제정 내용

- 단기, 중기 등 시기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도시재생지원계획 등의 기본적 내용이 담긴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도시재생기금, 임대료 보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기금의 마련.
- 질적 최저주거 기준과 양적인 주거안정기준 등을 법령으로 명시해야 함.
-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권(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있는 내용 중 임대주택 입주자격 가지고 올 것), 임대료 보조금 청구권, 주택개량청구권, 응급주거지원 청구권 등 주거복지 수급권을 명문화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13.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1) 개요

-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가임차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제1항 개정)

2) 제안 설명 / 취지

-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용범위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제3조(대항력),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10조(계약갱신청구권), 제11조(차임인상 제한) 등 일체의 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함.
- 적용범위를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로 정하는데 그 범위가 좁고, 급속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경제상황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 상가분쟁이 많은 도심·부심권의 상가임대차계약의 대부분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적용범위의 제한선에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가 근접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법률분쟁에서도 보증금과 월세의 상승으로 인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시점과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 혼재하여 갱신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기간연장이나 경매에서 보증금이 보호되는 경우인지 여부 등에서 법적안정성에 혼란이 오고 있음.
- 세계적인 입법례에서도 보증금과 월세로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적용범위는 세계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영국 등 유럽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임차인이 도박·주류판매업 등으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거나 임차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임대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경우만을 적용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도 대기업 등 대등한 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적용범위 규정을 만들었던 점에 비추어 임차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 임대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와 사행사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로 그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적용범위가 수시로 변동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큼.(대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가.나.목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함.)

3) 개정 내용

-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가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임차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인 경우
 3. 임차인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영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
 4. 임차인이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
 5. 기타 임차인이 제3호, 4호의 영업과 동일 유사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임차인 보호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14. 이자폭리 및 대부업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1) 개요

- 사인 간의 거래, 대부업, 제2 금융권 등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25% 이내로 제한(이자제한법 제2조 개정)
-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미등록 영업, 불법 채권추심, 이자상한선 위반 등)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내용 대폭 강화(대부업법 제8조, 제15조 개정)

2) 제안 설명 / 취지

- 2007. 3. 27.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한 이후 이자제한법은 부활·제정 당시 금융권 및 대부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한이율도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연 30%로 정한 이후 그 이후 계속된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전혀 이를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합법적인 고금리를 보장하고 있음
- 선진 각국은 대체로 제한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음.
- 2007년 이자제한법 부활 당시에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경제사정의 급변 등으로 이자율의 상한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는 구 이자제한법의 규정과 같이 제한이율을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제한이율을 연 20% 정도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정부는 이자제한법 제정 당시 금융권의 반발을 고려하여 제한이율을 연 30%로 정한 이후 단 한 번도 인하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법상 최고 이자율을 25%로 인하할 필요가 절실함. 즉,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업자가 대부금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연 50%의 범위(현 시행령은 39%까지 보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자제한법제를 가진 선진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

리를 합법적으로 보장.

- 일본에서는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최근 대금업에 대하여도 이자 제한법상의 제한금리인 연 15%~20%가 적용, 이에 수익성이 악화된 일본 대금업체가 대거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으로 진출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희생 아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그러므로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제한이율을 인하하고, 점차 제한이율을 폐지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일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개정 내용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관 및 개인 등 모든 금전대차에서 이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도록 함(이자제한법 제2조 개정)
-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이율이 적용되도록 함.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의 최고이자율도 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이율이 적용되도록 함(대부업법 제8조, 제15조 개정)
-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미등록 영업, 불법 채권추심, 이자상한선 위반, 허위 사실 광고 등)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민·형사적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대부업법 개정)
-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의 경우,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함(이자제한법 개정).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이자제한법)
- 정무위원회(대부업법)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시민경제위원회 02-723-5052

15. 채무자 방어권 확대·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1) 개요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디폴트(채무불이행) 사실 및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통보를 받은 채권자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연락하도록 하며 채무자의 방어권도 채권자 수준으로 확대·보장하도록 함.

2) 제안 설명 / 취지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불법 채권추심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지속적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방식의 채권추심이 아직 만연해 있고, 빚진 죄인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심리적 위축 속에서 채무자가 강압적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미국, 일본의 예에 따라 채권추심에 대한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보장하여 채무자가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지킬 수 있도록 함.
-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권추심업자나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도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지킬 수 있도록 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추심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
- 채권추심 문제는 부실채권의 원활한 처리하는 기능적 관점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평온한 삶의 보장과 인권 침해를 근절하는 관점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3) 개정 내용

-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호사 또는 법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음.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채무자가 채무의 수액이나 존부를 다투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시민경제위원회 02-723-5052

16.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1) 개요

-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관한 검사권과 제재권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금융소비자보호청) 설립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권리장전으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2) 제안 설명 / 취지

-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영미에서 이루어진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정부 및 국회 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선진 각국에서의 경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허울뿐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전혀 없는 기관임.
-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감독기구와 별도로 설립한다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검사권 및 제재권 등 전면적인 규제 권한을 가지고 행위규제를 한다는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자산건전성 감독기구(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와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권한을 보유하면서 자산건전성 감독기구와 독립하여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려면, 금융위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진 별도의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설립되어야 하고 공무원 조직으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소비자부가 없는 현재의 정부조직 구조상으로는 총리실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규는 자본시장법 등 개별법에 산재하여 있으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제에 관한 현재의 연구 정도나 논의 수준에 비추어 통일적인 단행법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므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개별법률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함.

-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쉽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안정성 등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등급제 도입이 필요함.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종사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법률상 제한이 없는데, 금융상품의 위험성과 정보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금융상품의 판매 담당자는 개인별로 판매업무 종사자 면허를 취득하도록 함.
- 금융상품에 대하여 방문판매를 금지하고, 전화판매,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상품 판매자의 보험가입 또는 손해배상기금 적립 의무화.
- 금융상품이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고 불법·부당한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기도 하며 그 위험성도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불법적인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소액·다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도 도입

3) 개정 내용

-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감독기구(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청 설립
- 금융소비자보호청에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권 및 제재권 부여
- 금융상품등급제 시행을 위하여 금융상품등급위원회 설립
- 금융상품은 판매 전에 금융상품등급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금융상품의 등급은 은행-일반금융소비자 판매가능상품, 비은행-일반금융소비자 판매가능상품, 비은행-전문금융소비자 판매가능상품, 등급거부로 구분하며, 금융상

품의 내용표시로 형평성, 투기성, 안전성, 단순성을 표기하도록 함. 형평성은 지출한 원금을 고려할 때 금융상품의 기댓값이 적절한지를 표시하고, 투기성은 금융상품의 사행 정도를 표시하며, 안전성은 금융상품제조자(또는 금융상품에 따른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금융사업자)의 도산가능성 및 안전장치(이행보증, 보험 등)의 구비 여부를 표시하고, 단순성은 금융상품의 구조가 단순한지 표시하도록 함.

- 금융상품 판매자는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 청약권유 서류, 계약서류 등에 금융상품등급 및 내용을 일정한 크기, 모양, 색채로 가독성 높게 표시하도록 하고, 금융상품으로 인한 가장 큰 위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함.
- 금융상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금융상품 판매종사자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면허의 구분은 금융상품등급구분과 유사하게 은행-일반금융 소비자 판매면허, 비은행-일반금융소비자 판매면허, 전문금융소비자 판매면허 등 판매장소와 판매대상을 기초로 한 자격구분과 증권 판매 면허, 파생상품 판매 면허 등 판매상품을 기초로 한 자격구분을 둬.
- 금융상품에 대하여 방문판매를 금지하고, 전화판매,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실시간 대화의 방법에 의한 판매는 금융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 금융상품 판매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또는 손해배상기금 적립을 의무화.
- 금융상품 판매자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소액·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표당사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4)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시민경제위원회 02-723-5052

17.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1) 개요

- 2012년 4월, 미국에서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아울러 법 개정 전에라도 국회에 참여연대 등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이 제출한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 수입중단 및 재협상촉구 국회결의안이 하루 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임)

2) 제안 설명 / 취지

- 미국에서 4번째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전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미국산 쇠고기 검역비율을 3%에서 50%까지 늘리는 관능검사 방법으로는 이물혼입이나 변질 또는 부패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SRM 혼입여부조차도 완전히 검사할 수 없는, 소해면상뇌증 검사와는 전혀 무관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일시적일지라도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 등이 있어야 할 것임.
-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일간신문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광고하였고 아울러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협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럼에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했음에 불구하고, 국민들과의 공개적인 약속까지 어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임.
- 이에 따라 즉각적인 수입중단 및 재협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됨과 동시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즉, 지금 당장의 미국의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및 재협상 조치로 대응해야 하며, 나아가 앞으로 광우병으로부터 국

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모든 수입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고 공동검역단을 구성하여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 함.

3) 개정 내용

-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동검역단을 구성하여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32조의2제1항)
- 공동 검역단은 국회와 중앙가축방역협회가 동수로 추천하는 축산 또는 수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과 소비자·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해야 함(법 제32조의2제2항)
- 공동 검역단이 조사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도록 하며 조사결과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입재개를 해야 하는 경우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법 제32조의2제3항)

4) 소관 상임위

- 농림수산해양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18.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안정적 실시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1) 개요

-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를 받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와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안정적 실시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2) 제안 설명 / 취지

-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관련 법인 학교급식법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고,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임을 임의적으로만 규정해놓아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지역별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규정하고 초중고 전 과정으로 확대해나가며, 친환경 무상급식의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시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 있음.
-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와 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등의 급식 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개정 내용

- 국가 및 지자체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법 제4조의 제1항)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법 제4조의 제2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친환경우리농수축산물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함. 다만,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것으로 함(법 제9조제1항)
- 국가 및 지자체는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법 제9조제2항)

4) 소관 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복지 확대와 노동 기본권 확보

19.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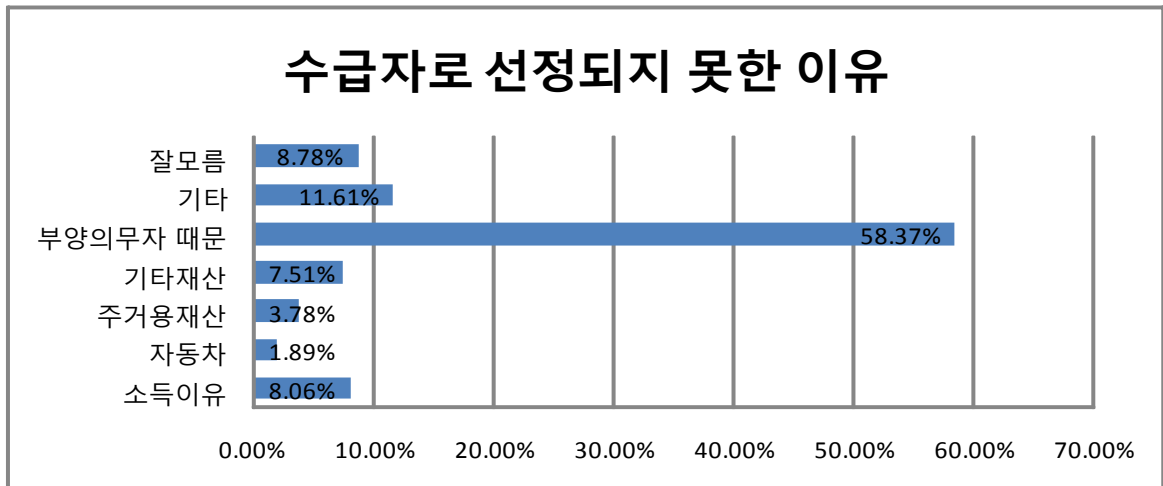
1) 개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2) 제안 설명 / 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제정 이후 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했으나 아직도 기초법은 빈곤 심화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발표(2009)에 따르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 인구의 약 8.4%에 이룸.

<그림>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



※ 출처 : 2009 한국복지패널

-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2009 정부발표). 2009년 기준으로 기초법에 따른

신규 수급신청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는 약 33%(31,856 가구)임.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실제 수급신청 전 문 의단계에서 포기 또는 포기를 종용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됨.

- 실제로 7,000여 가구를 표본가구로 매년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의 2009 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신청 탈락비율이 58.3%에 달하고 있음.
- 최소한의 안전망 없이 방치된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보장 법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의 개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인적관리 의무화, 급여 관 련 비위 예방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함.

3) 개정 내용

① 부양의무자 범위의 개선

-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 건에서는 제외함. 이에 따라 법 제5조 제1항의 수급권자의 범위 조항에서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 비 이하인 자로 한다."로 개정. 또한 법 제5조 제3항의 "제1항의 부양의무 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삭제하고, 법 제 2조 5호의 '부양의무자' 정의 규정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문구도 또한 삭제(제2조 5호, 제5조 1항 및 3 항 개정)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 는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제21조 7항으로 신설)
- 신청에 의한 조사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료 지급에 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제22조 1항 1호 개정) 부양의무자의 자 료·정보제출 거부를 이유로 수급권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에 대하여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제21조 6항 신설)하며 자료제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부양의무자 또는 수급권자에서 수급권자로 제한(제22조 8항 개정), 이는 확인 조사시에도 준용함(제23조 3항 개정)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과 보장비용 징수의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제46조 4항 신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정보 등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5항 신설). 또한 제46조 5항의 재판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제46조 6항 신설).

② 재산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 기존의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던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제2조 제10호 개정)
-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명문화하고 이 기본재산은 주택법 제 5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가구별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그 밖에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으로서 소득환산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으로 규정함(제2조 10의1 신설)

③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 최저생계비는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함(제6조 1항 개정)

④ 차상위계층에 대한 인적관리 의무화

- 수급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선지원을 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가구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로서 수급권자(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

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개정함(제2조 11호 개정)

-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장기관의 조사·관리 업무를 의무화하도록 명문화함 (제24조 1항 개정)
- 수급자(특히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고용지원 등 공공서비스 연계를 법률상 의무화 하도록 함. 차상위계층, 조건부 수급자 등의 순서로 공공서비스 우선 연계를 제도화하여 노동시장 진입 가능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고용을 지원하도록 함(제28조의 2 신설)

4)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5-5056

20.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1) 개요

-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은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당시 부칙에 의해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계적 인상”이 규정되어 있으나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5%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음. 따라서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반영되지 못한 인상분을 즉각 반영하고, 더불어 2028년으로 되어 있는 10% 수준 인상 시점을 앞당겨야 함. 또한 대상자를 65세 전 노인으로 확대하고 그 성격을 기초연금제도로 전화해야 함

2) 제안 설명 / 취지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너무나 취약함. 2007년 연금관련법 제·개정 시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50%(2028년 40%)로 낮추는 대신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2008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 5%에서 2028년 10%로 단계적 인상)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그 수준이 매우 미흡하여 노인빈곤 해결은 요원한 상황임.
-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더불어 현행 연금제도 구조를 올바르게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약 월 9만원씩(노인 단독 기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53.3%로 줄이는 방안을 연금특위에 보고한 바 있음.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은 물론 정부 출범당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65세 노인의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과 상충하는 것임. 현행 국민연금의 수급율과 급여수준이 매우 낮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마저 축소할 경우 노인빈곤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임.

3) 개정 내용

①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인상

-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당시 부칙(제8385호) 제4조의 2항은 기초노령 연금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명시하였음. 부칙조항 그대로 2028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10%를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0.25% 포인트 이상 증가되어야 하나 2008년 기초노령 연금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5% 수준으로 계속 동결되고 있음. 그러므로 내년에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후 반영되지 못한 4년치 인상분 (평균소득월액의 1%)을 즉각 반영하여야 할 것임. 또한 2011년 4월 현재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노령연금액인 9만1천원(부부가구 14만5천원)은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2,583원의 17.1%(2인 가구, 15.9%)에 불과함. 이는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임.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평균소득월액의 최소 1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함.

②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의 전액 국고지원

-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재원부담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재원의 40~90%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임. 중앙정부의 감세기조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열악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상당부분의 복지재원이 기초노령연금 재정에 투입되어 전반적으로 복지재정을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세입구조를 탄탄히 하는 획기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재정소요액은 전액 국고에서 충당되어야 함.

③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확대 및 기초연금제도로의 전환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취지가 미쳐 노후준비를 못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지불하는 세대 간

부양원리에 기초한 재원배분제도임을 고려하면 일부 노인계층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그러므로 현행 70 % 수준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로 확대해야 함. 부자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서적, 재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에 따라 소득이 과도한 노인의 경우는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추진할 필요 있음. 또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와 연관되어 운영되는 기초연금 제도로 그 성격을 전환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5-5056

21. 정리해고 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1) 개요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제안 설명 / 취지

- 199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정리해고 허용이 법제화된 이후 정리해고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남용되고 있음.
-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임. 때문에 기업은 구조조정의 해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기보다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폭넓게 적용해 손쉽게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드러나듯 정리해고는 정규노동시장에서 한번 이탈되면 다시 정규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이중 노동시장 구조와 부실한 사회안전망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극단적인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해고자에 대한 전직지원계획 및 고용유지계획, 정리해고에 관한 단체협약의 활성화 등을 통해 종합적인 정리해고 제도를 구축해야 함.

3) 개정 내용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를 강화하고, 그 해고의 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2항·제5항, 제6항 신설).
- 사용자에게 해고의 협의시 정리해고의 제안이유, 해고자 선정의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제24조의2 신설).
- 사용자가 일정규모이상의 근로자 해고신고 시 해고회피계획, 전직지원계획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하도록 해야 함(24조의3 신설).

- 우선 재고용의 절차와 구제요건을 강화해야 함(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4)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5-5036

22. 질병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1) 개요

- 직업성 질병의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배분

2) 제안 설명 / 취지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노동자가 증명해야 함. 그러나 직업성 질병의 경우,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임상실험을 통해서만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서 비전문가인 노동자가 이를 증명하기란 불가능함.
- 더욱이 독일은 60개, 일본은 50개의 증상을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23개의 증상만을 직업병으로 인정 하고 있으면서 노동자에게 의학적인 인과관계 입증하라는 것은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의 재활과 생존을 지원한다는 사회보험 취지에도 맞지 않음.
- 이처럼 까다로운 질병인정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의 산재승인률은 52.1%에 불과하며, 입증이 어려운 뇌심혈관계질환 15.6%, 직업성 암 등은 18%(2009년 기준)로 매우 낮음. 많은 노동자들이 재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고, 재해와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법령은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어 산재승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질병 인정 기준을 시급히 완화해야 함.

3) 개정 내용

- ‘직업성 질병’의 경우 증명의 책임을 나눠서, 재해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공단은 재해자가 증명한 사실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함(제37조의2 개정).

4)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5-5036

23. 실업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1) 개요

-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까다로운 수급요건으로 실직자 생계보호의 기능을 제도로 못하고 만큼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급여대상 확대, 수급일수 연장하고 더불어 고용보험으로 포괄하고 있지 못한 계층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야 함.

2) 제안 설명 / 취지

- 모든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통계청 자료 (2010.3)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8.9%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은 42.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25.7% 등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더욱 낮음. 이는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과 이들을 고용한 영세 사업주들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기 때문임.
-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서는 안 되고, 180일 이상을 일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직한 임금 근로자 중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은 실제 11%에 불과함.

<표>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비수급 사유
(단위 : %)

	비수급					수급
	고용보험 미가입	피보험단위 기간 미충족	이직사유 미충족	기타 비수급	수급 종료	
전체	45.0	11.1	22.9	6.8	2.9	11.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급여 비수급 실직자 부가조사」, 2009. 4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2011, 4

-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자나 영세 상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하고 있음. 이렇듯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일자리 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실업, 질병, 노후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선진국가의 기본임. 더욱이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실업이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이 된 이상,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완화해야 함.

3) 개정 내용

- ① 고용보험 구직급여 제도개선(수급요건 완화, 급여대상 확대, 수급일수 연장 등)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임금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는데 잦은 실직과 비정규직 증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음. 이러한 현실을 감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함(제40조제1항 제1호 개정).
 - 구직급여는 실직 전에 임금근로자로 근무했던 기간과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장 240일까지 지급됨. 그러나 구직급여의 평균급여 일수는 120일(4개월) 정도로 실업자의 생계를 보장하기엔 역부족임. 따라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최장 240일인 것을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되, 소정급여일수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50조제1항 개정).
 - 현행 고용보험법은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가사·육아, 상사의 괴롭힘, 과도한 노동 강도 등과 같이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은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3~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되, 엄격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제58조제2호 가목 개정).

②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

- 영세 상인이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은 임금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경기불안에 따른 실업은 청년층, 영세상인,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음. 그런 만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도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본인 및 배우자 의 소득·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액의 80%를 180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제도를 도입함(제67조의2 부터 제67조의10까지 신설).

4)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5-5036

2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1) 개요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민간 기업 중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에게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함

2) 제안 설명 / 취지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2012년 청년(15~29세) 4월 실업률은 8.5%로, 전체 실업률(3.5%)의 2배에 이룸. 더욱이 공식 청년실업자 수에 취업준비생, 별다른 취업활동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청년층을 포함하면 사실상 청년실업률은 25% 이상에 달함.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가 나아지지 않은 것은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늘리지 않기 때문임. 실제 공공기관의 신규청년채용 비율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 2010년 2.4%에 불과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에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또한 2011년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1999~2009년 사이 대기업은 49만개의 일자리를 줄였음.
- 청년실업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서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 대기업의 고용책임을 강제해야 함.

3) 개정 내용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제5조제1항 개정).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공공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제5조제4항 신설).

- 민간 기업집단 중 해당 연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매년 상시 근로자 수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4)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5-5036

25.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1) 개요

-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 신설(정액급여의 50% 이상) 및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노·사 추천권 보장

2) 제안 설명 / 취지

-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액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또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소보다는 노사간의 협상이나 공익위원들의 중재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따라서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은 대단히 중요함. 이러한 이유에서 ILO(국제노동기구)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제131)은 노사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익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의 구성이 달라지는 등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됨.

3) 개정 내용

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 신설

-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추가하고(제4조 제1항 개정)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제4조 제3항 신설)

② 수습노동자 및 감시단속노동자 감액적용 삭제

- 수습노동자 및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함 (제5조 제2항 개정)

③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정부가 차액 지급

-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체불된 최저임금액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개정)

④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노·사 추천권 보장 신설

-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을 법률로 규정(제14조 제6항 개정)
- 이에 공익위원을 노·사 단체 및 정부가 각각 3인씩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제14조 제7,8,9항 신설)

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적 운영 신설

-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회의도 공개하며, 중계방송 등을 허용하도록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 신설)

4)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5-5036

민주주의 기본권 확보

26. 투표권 보장, 정책 선거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1) 개요

- 선거권 행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투표소 확대 설치 등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투표권 보장 범위를 확대 하도록 함.
- 선거운동에 대한 각종 규제조항을 개정(폐지)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고, 정책 선거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함.

2) 제안 설명 / 취지

①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 생업 등으로 인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실질적 투표권 보장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함. 이는 결과적으로 투표율 향상을 가져와 당선자의 대표성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피고용 노동자의 경우,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음. 이를 강제하기 위해 유급휴무의 명시, 감독기관의 역할을 포함해 구체적 보장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투표시간이 오전 6시~오후 6시로 정해져 있어, 선거일에 근무하는 노동자(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2013년부터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한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지만, 투표 기간이 짧고,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보완 방안이 필요함.

②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과 정책 선거를 가로막는 규제조항 개정해야

-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음. 2012년 2월,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가능해졌으나, 오프라인에서는 여전히 강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규제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표명을 제한하여 '정책 선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 무엇보다 선거운동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을 제약하고 있음. 또한 광범위한 기간(선거일 전 180일부터) 동안 후보자·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고 있음.
- 한편, 정책 공약의 비교 평가 시에 순위·등급 등 서열 행위를 원천 금지해 사실상 정책 평가와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3) 개정 내용

① 투표권 보장 방안

- 선거권 행사의 시간과 과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피고용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유급휴일로 지정하거나, 적정 시간의 유급 휴무를 보장하도록 법률 개정. 또한 피고용자가 익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선거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화 상담·신고 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선거권 보장 법조항 준수 안내와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법률 개정(공직선거법 제6조 외)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현행 오전 6시~오후 6시에서 오전6시~오후 9시로 세 시간 연장하도록 법률 개정(공직선거법 제155조)
- 부재자 투표를 용이하게 함.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된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그 요건(현행 2천인 이상에서 5백인으로)을 완화하는 등 부재자 투표소를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기간을 연장하여 2013년부터 실시될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한 부재자투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58조의3)

- 기타 : 선거권 보장과 관련된 조항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함께 검토하도록 함.

②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정책선거 보장 방안

- 선거운동 정의를 명확히 함.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 언론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을 평가할 때 점수나, 순위·등급 공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
-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정당(정책 포함)에 대한 찬반의견과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공직선거법 제93조1항) 또한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7조)
-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규제하고 후보자·정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기능하는 ‘인터넷 실명제,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82조의6, 제110조, 제251조)

4)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설치시)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27.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터넷실명제 및 통신심의 폐지

1) 개요

- 민주주의 척도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참여촉진적인 매체인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실명제 폐지, 임시제도 개선,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 폐지, 통신자료요청 제도 폐지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44조의5폐지, 44조의 2개정, 44조의7항1폐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제21조개정,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의3개정)

2) 제안 설명 / 취지

- 인터넷실명제는 악성댓글 방지 목적으로 2004년 도입되었으나 실제 악성댓글이 줄었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보고된 바 없음. 오히려 댓글 전체수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익명의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
-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익명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임, 따라서 인터넷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함
- 또한 게시물에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표현물에 대해 최장 30일간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임시제도 역시 주로 대기업, 권력기관, 정치인 등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표현물 게시자의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 심의는 사법기관이 아니면서 전문성 결여, 자의적 판단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음. 이 행정심 의의 근거인 제44조의7은 폐지되어야 함.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이 최종 판단하게 하는 등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
- 인터넷실명제로 보유하게 된 개인의 주요 신상정보는 수사의 필요에 의한

다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에 의해 수사기관, 국정원 등에 제공됨. 미네르바, 민간인불법사찰피해자 김종익씨의 신상정보도 이에 따라 경찰이 파악할 수 있었음.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익명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통신자료요청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는 개정되어야 함

3) 개정 내용

- 인터넷실명제 폐지(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5 폐지)
-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만으로 최장 30일 블라인드 처리하게 하여 포털사 등 사적 검열의 가능성을 열어둔 임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표현물의 게시자에게 복원요청 등 이의신청절차를 두는 등 개선임시제도개선(정보통신망법제 44조의 2)
- 방송통신심의위의 통신심의 폐지(이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법제44조7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제21조 개정)
- 영장주의 위반, 익명의 권리 침해 등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 위반한 통신자료요청 제도 폐지(전기통신사업자법제83조3개정)

4) 소관 상임위

-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28.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명예훼손·모욕 관련 형법·민법 개정

1) 개요

- 공무원, 정치인, 국가 등 공적 영역에 대해 국민의 비판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것임. 따라서 국가 및 공무원 등 공적 영역에 있어서 명예훼손,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폐지가 필요함(형법제307조1, 311조)

2) 제안 설명 / 취지

-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일반 시민의 명예를 보호한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4년간 공무원, 정치인, 국가기관 등 권력자의 남용이 두드러짐.
- 다른 나라의 예나 역사적 사실에서 드러났듯이 표현의 자유는, 주로 정부나 국가 권력 등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표현을 그 핵심 대상으로 함.
- 어떤 표현으로 일반 국민이 고소되면 수사, 기소, 재판의 형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나중에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고통과 위축은 회복하기 어려움. 이는 결국 자기검열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임
-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책임도 개선해야 함. 민사상 책임추궁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축효과는 일어남.

3) 개정 내용

- 형법상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폐지해야 함(형법제307조1, 형법제311조 폐지)
- 국가, 지자체 등은 민사상으로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함(민

법제751조 개정)

-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이나 직무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함(민법 제 751조 개정)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29.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

1) 개요

-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을 전면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집회에만 신고의무 부과하도록 하고, 미신고집회의 범죄화 폐지, 금지통고제 폐지,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등 집회해산 요건의 명확화 및 엄격화하, 집회시위의 장소와 시간 규제 조항 개정 등 집시법 전체를 전면 개정하여 헌법정신에 맞게 재설계해야 함.

2) 제안 설명 / 취지

- 현행집시법은 평화적 집회의 보호라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라기보다는 적법한 집회와 위법한 집회를 구분하여 위법한 집회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사전신고제가 이전의 집회경력, 집회주체의 성격 등을 이유로 금지하는 등 허가제와 사실상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음.
- 신고제의 취지는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에 집회개최자가 “협력”을 하는 것임. 그런데 신고, 개최, 마무리 등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적 집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해산하고 주최자 등을 처벌하여 왔음.
- 최근 기자회견, 플래시몹, 1인 시위 등도 미신고 집회로 처벌하는 경향이 커짐.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정의 및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위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규정만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규제 일변도의 집시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화적 집회 보호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평화적집회보호법’으로 다시 만들어야 함

3) 개정 내용

- 평화적 집회 보호와 다른 공공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준비하기 위해 통상의 행정절차로서의 협력의무로 사전신고제는 유지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집회에만 신고의무 부과(집시법 제6조 개정).
- 미신고집회의 범죄화 폐지, 금지통고제 폐지,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등 집회해산 요건의 명확화 및 엄격화, (집시법 제22조, 제8조, 제20조 개정)
- 헌법재판소 야간집회 위헌판결 취지에 맞게 시위의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의 개정(집시법 10조 개정)
- 집회 시위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장소 제한을 최소화함(집시법 11조 개정)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30.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보장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1) 개요

- 정보기관, 수사기관 등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가져갈 때 심사기준과 연장절차 등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생활의 침해 정도가 심각한 패킷감청은 허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3조 등 개정)

2) 제안 설명 / 취지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온라인 사업자에게 글쓴이의 IP주소와 인터넷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에 허가를 요청할 때 범죄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긴급할 시 사후에 허가를 받아도 됨. 정보기관 등의 인터넷감청은 해마다 급증, 특히 감청 통계건수의 97%가 국정원이 시행한 것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감청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음(2010년).
- 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수사기관, 정보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여 2010년 한해에 인터넷에 대한 통신사실자료요청 건수만 49,091건에 달함.
- 인터넷메일, 비공개 글 등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인터넷 감청 건수도 2010년 한해 723건이었음. 감청의 경우, 감청 주체가 주로 국정원이란 사실과 국정원이 개별 이메일이나 게시글이 아니라 아예 전체 회선에 대한 패킷감청을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하였음.
- 범죄의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신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사가 엄격하지 않아 법원의 기각율이 3% 미만일 정도로 쉽게 내 주고 있음(2010년 국정감사 자료).
- 정보, 수사기관 등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할 때 심사기준, 연장절차 등

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개정해야 함

- 감청의 경우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정해야 하며 사생활의 침해 정도가 매우 광범위한 인터넷패킷감청은 금지되어야 함

3) 개정 내용

- 감청의 허가 요건 및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통비법 제5조,6조 개정)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허가 요건 및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함(통비법 제13조 개정)

4) 소관 상임위

-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권력형 비리 근절과 새 정부 투명성 확보

31. 검찰견제와 부패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1) 개요

- 검찰 견제와 부패척결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2) 제안 설명 / 취지

-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기소권을 독점하여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음. '스폰서 검사'에 대한 수사나 '그랜저 검사'에 대한 수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검찰의 범 죄는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이뤄지고 않고 있음.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표적수사나 수사발표 시기조절, 피의사실공표 등을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음. 특히 대검 중수부는 정치적 폐해가 큼.
-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해 검찰을 견제 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 특히 2011년 상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합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처리되지 못했음.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비처의 신설은 매우 시급한 문제임.
-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있지만 검찰은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검찰이 파이시티 비리 수사로 최시중 전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을 구속했지만 축소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전이 없는 상황임.
- 민간사찰 사건과 내곡동 사저 비리 사건 등 대통령과 권재진 법무부장관 등 인사권자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검찰의 수사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이런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야 할 것임.

3) 제정 내용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6월 1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는 오래전부터 권력형 부패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왔음. 1996년 부패방지법제정운동을 시작하며 부패척결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 전담기구를 제시한바 있음. 또한 2002년과 2004년에는 각각 입법청원을 제출한 바 있음. 고위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설치에 예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기소독점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반발과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음.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내용은 검사를 비롯한 특정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고 이에 대한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임.

②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국회와 검찰, 법원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 운영.
-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검사 및 판사,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과 대통령 친인척 등으로 특정하고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원범죄 등으로 특정.
- 수사처의 독립성확보를 위해 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인을 추천하게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 처장의 자격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처장의 경우 판·검·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와 법학교수로 10년 이상 재임한자 중

에 책임자를 처장이 임명하도록 함.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근무했던 자는 퇴직후 2년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의 변호 등 관련 업무를 금지하고 검사직을 수행하다 사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근무한 경우는 2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해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건의 내사 및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하고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처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치게 함.
- 고소·고발한 자가 수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변호사제도를 두도록 하였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 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하여 조직운영의 독립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③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앞서 정치적 폐해가 큰 대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은 폐지해야 함. 검찰청법 제2조 3항에 “대검찰청에서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사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검찰청법 2조 3항 신설)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5-7104

32.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1) 개요

-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하향 조정하고, 신고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함. 또한 신고된 정치자금 내역은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함. 이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함.

2) 제안 설명 / 취지

- 정치자금제도의 기본 원칙은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임.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공개되어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행 정치자금법은 열람기간(3월간) 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제한된 정보만 게재하여 열람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활동의 물적 토대인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또한 공개되는 고액 기부자의 경우, 금액 기준이 높을 뿐 아니라, 신고 내역도 구체적이지 않아 고액 기부자 정보 공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누구라도 선관위에 신고된 각종 정치자금을 기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해야 함. 또한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하향 조정하고, 신고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해야 함.

3) 개정 내용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열람기간을 삭제하여 기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열람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정치자금법 제42조)
-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원 이상 기부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함. 또한 고액 기부자의 신고 내역에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 기

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정치자금법 제23조제2항, 제40조 제3항제1호, 안 제42조제4항)

4)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설치시)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33. 이해충돌방지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1) 개요

- 고지거부권 삭제 등 재산등록제도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제한 규정과 업무연관성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공직자윤리제도를 만들고자 함.

2) 제안 설명 / 취지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도,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 등록 시 고지거부를 통해 손쉽게 직계존비속 재산의 등록을 거부하여 재산을 은닉할 수 있음. 또,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어 매년 업무유관기업에 취업불법로비 등 불공정한 공무집행을 유발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상 가치가 높고 이해충돌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 제한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
- 또한, 대통령은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연관성이 크고, 영향력이 막대하며 전직 대통령에게는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종신토록 연금급여와 의전을 제공하는 등 권한과 혜택이 크나, 전직대통령에게는 재산의 등록과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 이에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고 전직대통령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를 규정하는 한편, 고위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 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넓히고, 변호사 등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고 부정한 청탁행위와 현직 공직자에 대한 사적만남을 제외한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여부를 보고하는 등 관련제도를 강화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공직자의 윤리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개정 내용

-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구체화해야 함.
- 재산등록의무자에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연관성이 크고, 영향력이 막대하며 임기 후에도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종신토록 연금급여와 의전을 제공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전직대통령을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야 함.
- 액면가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회사매출액과 소유재산을 같이 신고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지분형태로 보유하여 은닉하거나 축소하여 신고할 수 없도록 하였음. 공직자의 재산등록 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해야 함.
-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거래가 공개되도록 하여 재산공개를 통한 공직자의 감시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이해관계의 충돌 또는 윤리문제 발생이 인정될 경우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행법에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재산신고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처럼 백지신탁하도록 해야 함.
- 기존 법률에서는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 부터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직무관련자와 금지되는 선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을 금지하되 다만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함.
-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규정을 신설하여 이해관계 직무관련자의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되도록 해야 함.

- 업무외의 취업제한규정과 소득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의 의무를 훼손할 수 있는 업무 외에 과도한 보상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대부등의 제한을 통해 직권을 통한 대부, 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함.
- 퇴직공직자의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소속기관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해야 함.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등을 금지해야 함. 공직자는 퇴직공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하도록 해야 함.
- 퇴직 후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는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밀접한 업무 연관성의 범위를 확대해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해야 함. 취업의 개념을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재 협소한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체 등도 제한 범위에 확대 해야 함.
-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해야 함.
- 고의로 선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절차에 따라 반환 등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대부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4. 공익제보자 보호강화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1) 개요

- 부패방지 대상 공공기관에 사립학교와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처벌조항 강화하자는 것임.

2) 제안 설명 / 취지

-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예방과 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의 보호조치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에 부패행위를 한 경우에 신고한 경우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 국민감사청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의 경우도 제한기간이 짧고 제한 범위가 협소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사회에 알려 고발한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보복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부패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국민감사청구 시 감사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은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개정 내용

- 부패신고와 신고자보호 등의 기준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제2조)
- 권익위원회의 업무에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를 추가하고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기타 조사 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 없

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12조, 제59조, 제91조)

- 위원회가 조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기간 연장은 30일 이내로 규정하였음. (제60조)
- 신고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은 경우 위원회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해진 기한이 없어 60일 이내로 조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위의 불이익·차별조치는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복을 위한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였음. (제62조, 제90조, 제91조)
-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은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중에 신분보장을 위한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와의 관여를 거절하거나 부패행위정보의 은폐협조를 거절한자 또는 내부에 부패의 의심이 있어 이를 확인하다가 불이익을 당한자도 위원회에 그 조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62조)
- 이 법에 의해 신고를 하다가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임의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꾸어 규정하였음. (제62조)
-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언론기관에의 제보, 협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거나 알리려 한 경우도 신분보장·신변보호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제67조)
-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음. (제68조)
- 현행법이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항목 중에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는 다른 기관의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를 이유로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제72조)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5. 예산낭비 방지와 환수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1) 개요

- 국민이 국가 등 공공기관의 공금지출, 재산, 계약 등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제도 도입하고, 이러한 국민소송으로 공공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경우 보상금 지급하도록 함.

2) 제안 설명 / 취지

- 국가 및 공기업 등의 예산낭비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임.
- 기존의 감사 및 부패방지기구만으로는 예산낭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참여를 통해 예산낭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 등이 운영하는 공공재정의 최종 부담자가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함.
- 따라서 국민이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를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함.

3) 제정 내용

- 국민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재무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그 재무의 적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음(안 제3조).
- 국민은 공공기관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를 상대로 4가지 유형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4조).

- 국민소송의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으로 함(안 제5조).
- 국민소송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의 10분의1(1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함(안 제13조).
- 국민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한 때에는 원고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등의 실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음(안 제16조).
- 누구든지 국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 징계, 전보 기타의 불이익을 줄 수 없음(안 제18조).

4)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6. 알권리 확대·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1) 개요

- 정보의 사전공개 강화, 비공개 정보 축소 등 정보공개의 전반적 확대
-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부여하며 정보의 위변조 허위공개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2) 제안 설명 / 취지

- 자의적 비공개가 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들의 정보공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취하율은 급격히 증가함. 자의적(악의적) 비공개에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청구권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음.
-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 이의신청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보의 위조·변조에 대한 벌칙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를 확대하려는 것임.

3) 개정 내용

- 공공기관 정보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수 사항이며,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 공개하여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는 정보공개 원칙을 강화함(안 제3조).
-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전 정보공개를 강화함. 전자적으로 처리된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함(안 제7조제2항).

- 국민의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공개청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목록의 신속하고 빠짐없는 공개가 필요. 해당 정보는 비공개 정보라도 정보목록 자체에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보다 명확히 함(정보목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한 공개 주기 등은 시행령 개정 시 반영).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제공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보공개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함(안 제8조).
- 자의적 비공개 방지를 위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 축소 및 구체화 필요함.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비공개 사례를 없애는 한편, 적극적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사항으로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가능 시점을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및 퇴직공무원의 재직 중 성명·직위를 공개하도록 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의무기관을 명확히 하고 심의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심의회외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모든 기관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 제고함. 국방·외교 등을 주로 하는 기관의 외부전문가 위촉비율도 현행 1인 이상에서 2분의 1로 확대함(안 제12조).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사본 교부 거부 등의 사례를 방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13조제2항).
-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보다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가치가 상실되는 정보의 특성으로 정보공개 행정심판의 신속성이 요청되는 한편 정보공개 결정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정보공개행정심판 기능을 보완·수정할 필요 있음.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은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정보공개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심판 결정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안 19조).

- 정당한 정보공개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금지, 정보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함(안 제28조 및 제29조).

4)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7. 기록물의 체계적관리·무단폐기 방지를 위한 기록물관리법 개정

1) 개요

- 기록물 폐기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의무화
- 기록물이 담긴 매체 파기시 처벌조항 신설

2) 제안 설명 / 취지

- 이명박 정부는 기록물관리를 행정 내부규제로 보고 있어 기록물의 임의적 폐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 후퇴를 시도하고 있음. 또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기록의 인멸', '경찰의 선거개입기록 무단폐기' 사건 등 기록물 무단폐기가 반복되고 있음.
-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직렬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 또한 중요 기록물의 멸실을 막고 폐기를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기록물을 폐기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를 의무화 하며, 기록물뿐만 아니라 기록물이 담긴 매체 등을 무단으로 폐기 및 파기하는 것과 기록을 임의적으로 위변조 하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업무의 결과로 남긴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기록을 관리하는 자를 연구직으로 명시하여 기록관리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3) 개정 내용

- 기록물관리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연구직렬상의 기록연구직으로 명시함(안 제41조).
- 모든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

원의 심사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함(안 제27조 제1항).

- 기록물 뿐만 아니라 기록물이 담긴 매체 등을 폐기 및 파기 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함(안 제50조).
- 기록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변조 한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록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제51조 5호 신설).

4)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8.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1) 개요

- 공익침해 행위 적용 대상 법률에 비자금, 분식회계, 탈세, 불공정약관 등을 적용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명기하고, 국민권익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며, 조사 불응시에 형사처벌 등을 포함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강화.

2) 제안 설명 / 취지

- 2011년 6월 제정되어 9월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그간 공공기관으로 대상이 국한되었던 부패방지법과는 달리 기업 영역까지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확대하여 공익침해의 사각지대를 줄여 공익신고자보호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그 신고 대상 및 보호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법, 형법 등 기업의 불법비리 행위 관련 법률들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차명계좌, 분식회계, 배임·횡령 등에 대한 공익신고는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였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의 법률을 포함하는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을 시행령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모두 별표로서 규정해야 함.
- 또 보호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익신고 후 조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에 따른 조사에 불응 시, 벌칙이 과태료 행정처분만이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권익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보호조치 신청에 따른 조사에 계속 불응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끔 개선해야 함.
-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련해서는 언론/시민단체 등 외부에 알렸을 때도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여야 함. 또한 기명 신고만을 허용하는 것을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함. 추가적으로 신고자 등이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다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두어야 할 것임.

3) 개정 내용

-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법, 형법 등 기업 불법비리 행위 관련 법률들을 포함하고, 시행령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모두 별표로서 규정해야 함.
-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된 공익침해행위 관련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함.
- 조사에 계속 불응 시 형사처벌도 가능 하도록 해야 함.
- 언론/시민단체 등 외부에 알렸을 때도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해야 함.
-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신고자 등이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면제 혹은 감경이 이루어져야 함.

4)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남북관계 개선, 군 개혁, 외교안보통상 민주화

39. 국회 검증 없이 취해진 5·24 조치 해제 촉구 결의

1) 개요

-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 해소와 국민과 국회의 검증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채 남북관계 단절시킨 5·24 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2) 제안 설명 / 취지

- 2010년 3월 22일 천안함이 서해상에서 침몰함.
- 그러나 천안함 침몰 관련 정보가 대부분 은폐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문점도 해소되지 않음.
- 국민과 주변국들이 신뢰할만한 조사결과가 아직 제시되지 않음.
- 이명박 대통령은 불투명하고 부실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가 한창인 2010년 5월 24일, 대북 봉쇄정책인 5·24 조치를 발표함.
-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적 안위와 관련된 중대사안을 정략적 목표와 일정에 따라 외교적 군사적 대북 제재조치들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임.
-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래 지난 22년간 쌓아온 모든 평화적 위기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킴.

3) 결의안 내용

-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할 것 촉구
- 새로 구성될 19대 국회에서 초정파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천안함 사건의 진상에 대해 조사
-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국제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천안함 사건의 실체 검증
- 6·15 공동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위해 정부가 즉각적인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4) 소관 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40.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1) 개요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징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병역법 33조에 항 신설)

2) 제안 설명 / 취지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징총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or)라 하여 최근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의 관계에 있어 재정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국제인권사항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사항이 기도 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주장하다 감옥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2011년 현재 1만 7천여명에 달하며 현재에도 약 8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음.
- 병역의무제인 우리와 제도나 여건이 다르다고는 할지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 인정과 수감자 구제를 촉구하고 있음.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지난 10년간 사법 측면에서 법원의 무죄판결이 두 번 있었으며, 형량은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들었음. 2007년 정부는 사회복무제도 도입안을 받아들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17대, 18대 국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되다가 자동폐기되었음.
-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가 범죄시되지 않도록 해야 함.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법은 안보 논리나 문

화적 특성을 이유로 위배될 수 없음. 대체복무제는 국제인권기구의 표준에 맞게, 다양하게 그리고 징벌적 성격이 없이 추진되어야 함.

3) 개정 내용

-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 (병역법 2조에 추가).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 (병역법 33조에 항 신설)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 (병역법 33조에 항 신설)
-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의 1.5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33조에 항 신설)

4)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41.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

1) 개요

- 군복무기간을 2020년까지 15개월(육군기준)로 단축함으로써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병력규모 단축. (병역법 제18조 2항 제1호 개정)

2) 제안 설명 / 취지

-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안에 따라 국방부는 군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현역병 기준)로 단축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2010년 9월 27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와 한나라당은 육군 현역병의 군복무기간을 21개월로 확정함.
- 국방부는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 필요성', '병사 숙련도 유지 어려움'을 내세워 18개월 단축안을 폐기한다고 밝혔으나, ▷군사대국 중국과 상대하고 있는 대만도 군복무기간을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있다는 점, ▷군사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 역시 군복무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덴마크는 4개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모병제로 전환 이전에는 군복무기간이 각각 12개월, 10개월이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타당성이 적음.
- 국방부는 북의 비대칭 위협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나, 비대칭 위협은 군사적으로 열세인 상대방이 일부 영역에서 비대칭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력을 형성한다는 의미로서 이 경우 전면전 위협은 감소하여 비대한 지상군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음.
- 저출산 및 고령화를 고려한 여러 국가들은 군복무기간을 1년 정도로 한정하고 군 병력을 1%로 이내로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사회이므로 오히려 이 비율은 더 낮아져야 함. 낮은 출산율로 인해 청년층의 노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데 갈수록 희소해질 청년층을 군대에 더 오래 묶어 둔다는 것은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의미함.
- 부사관제와 유급병 제도를 보완할 경우 육군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복무기간을 2020년까지 15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음.

음.

3) 개정 내용

-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5개월로 단축하도록 법률 개정(병역법 제18조 2항 1호 개정)

4)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42.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완전 철수(연장 동의안 부결)

1) 개요

- 2010년 2월 아프간재파병이 결정됨. 맹목적인 한미동맹론, 근거 없는 국익 획득 등을 이유로 파병된 한국군은 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음. 또한 2년 6개월이라는 전례 없는 파병기간은 국회의 파병 사전동의권을 훼손했음. 이에 오쉬노부대의 파병을 철회하고 연장 동의안은 국회 논의를 통해 부결되어야 함.

2) 제안 설명 / 취지

- 2009년 10월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 확대 파견하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경비 병력을 파병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정부는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의 증가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보편적 의무의 수행이라고 밝히며, 글로벌코리아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함.
- 정부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파병 결정은 지난 2007년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군부대를 철수한 이래 유지되어온 국민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합의가 번복되어야 할 아무런 중대한 사유가 없었음. 파병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권한을 무시한 행정부의 독단적·독재적 행태임.
- 미국과 다국적군이 철군전략을 모색하는 시기에 한국군 아프간 재파병은 어떤 타당하고도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음.
-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 시작과 과정, 목표와 방식에서 명분 잃은 전쟁이며 전망이 불투명한 전쟁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쟁'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와 전망을 제공하지 않고 재파병을 추진함으로써 한국군은 테러의 표적이 되는 등 위험에 노출됐음.
- 파병의 주된 이유였던 지방재건팀의 활동이 불분명하며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음. 지방재건팀의 실체, 원조 효과성, 재건지원효과 등에 관

한 정보공개와 평가가 시급함.

-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은 도탄에 빠진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의 즉각적인 제공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중심이 된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함.

3) 결의안 내용

- 아프간에 재파병한 오쉬노 부대의 철군
- 아프간 재파병 연장 동의안 상정시 국회 논의 통해 부결

4)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5051

43. 국회의 파병 사전동의권 훼손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 개정

1) 개요

-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 사전동의권을 침해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해외파병 전반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통제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위헌적 법으로 위헌조항 삭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PKO법) 6조 3항)

2) 제안 설명 / 취지

- PKO법이 2010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PKO법 제6조에 따르면 정부는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에서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파견지 선정, 부대편성, 병력규모, 보유장비 등에 관해 국제연합과 잠정합의할 수 있음.
- 국회가 동의해 줄 것을 전제로 정부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비합리적, 위헌적 조항임. 국회의 파병 사전 동의권은 헌법 제60조 2항에 명시된 국회의 배타적 권리이자 의무임.
- 정부가 헌법상 견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집행을 잠정합의한다는 것은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것임. 외교적 실무협의를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존중하고, 국회에 논의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고하면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법조문에 넣을 필요가 없음.
- PKO 파병은 유엔이 인정하는 다국적군 파견, 예컨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는 구분되는 유엔의 공식적인 평화유지군 파견으로서 통상 1000명 이내로 파견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따라서 1000명 이내의 파병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유엔과 교섭을 진행해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PKO 파병에 대해 행정부 재량을 확대하고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위축시키는 것을 의미함.
- 평화유지군 파견은 분쟁 해결과정의 최종적인 그리고 가급적 피해야 할 최

후의 선택이어야 함. 선부른 군사적 개입보다는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노력과 분쟁원인 해소에 초점을 맞춘 외교적 인도적 노력과 국민과 국회의 동의기반 확보가 파병보다 중시되고 선행되어야 함.

3) 개정 내용

- 정부는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에서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PKO법 6조 3항)

4)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44.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1) 개요

- 통합적인 개발협력 시스템을 구성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통해 원조 효과성 보장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이하 기본법 7조, 15조 개정)

2) 제안 설명 / 취지

-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원조체계와 분산된 사업 집행체계로 한국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원조 효과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2008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특별동료평가(Special Peer Review)에서 원조 및 집행체계 통합화를 권고 받은 바 있음.
- 이에 국무총리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신설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무상 개발협력 사업들이 통합, 조정되고 있지 못해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고착시키고 있음. 따라서 통합적 원조시스템을 구성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 고양 필요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당시(2010년) 집행체계 일원화가 반영되지 못함.
- 투명하게 원조 집행내역과 정보를 공개해야만 정치적 고려에 의한 부적절한 원조대상 선정을 막고 효과적인 개발협력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

3) 개정 내용

- 협력대상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기본법 2조 3항, 12조 1항, 8조 3항)
- 주관·시행기관간의 협의·조정 절차 마련(기본법 10조, 20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조정·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의무 및 절차 명시(기본법 7조)
-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 연구자 및 활동가의 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여 보장(기본법 7조 7항)
-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구체적 선정기준, 절차 마련 및

공개(기본법 14조)

- 심층적인 사업평가기준 마련, 지표개발에 시민사회단체 참여 보장(기본법 13조)
- 사업의 투명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사전타당성조사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공개(기본법 15조 2항, 18조 2항)

4) 소관 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45. 통상협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위한 통상절차법 개정

1) 개요

- 현행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거부 사유 외에 추가적인 거부사유 삭제, 국회의원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부가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
- 국회의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한 협상 전 국회 보고 및 동의절차 의무화,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한 협상 쟁점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10조 등 개정)
- 정부의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권 보장

2) 제안 설명 / 취지

- 18대 국회 말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하여 통상협상 정보와 협상이 미칠 영향에 대해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통상절차법을 제정했음. 통상절차법에 대국회 보고 의무가 포함된 것은 진전이라 할 수 있으나, 통상협상에 대한 국회 통제장치의 핵심인 ‘국회 입법 사항 관련 쟁점에 대한 사전 보고 및 사전 동의 의무화’를 명문화하지 않아 현재의 통상절차법으로는 외교통상부의 일방적인 협상 진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움.
- 또한, 현행 통상절차법은 통상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거나, 통상협상의 구체적 진행과 관련하여 그 공개가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통상협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정부가 이 두 조항에 근거해 모든 통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통상절차법 제7조와 제8조는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누구든지 정부에 통상협상 또는 조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수단에 그치는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보다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권 보장 등의 실질적인 입법이 필요함.

3) 개정 내용

- 현행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거부 사유 외에 추가적인 거부사유 삭제, 최소한 국회의원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부가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통상절차법 제4조(정보의 공개) 개정 등).
- 국회의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해 협상 전에 국회 보고 및 국회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화(통상절차법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등 개정), 주요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된 협상 쟁점에 대해 국회 보고 의무화 규정 마련 (통상절차법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등 개정)
- 정부의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제출권 보장 명문화

4) 소관 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02-725-7105

2부

19대 국회 2012년 청문회/국정조사 과제

1. 청와대·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 청문회

1) 개요

-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중심으로 벌어진 청와대·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2) 청문회 취지

- 검찰의 재수사 착수 후, 이영호, 최종석, 진경락 등의 구속기소가 있었으나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사실 이외에 검찰에 새롭게 밝혀낸 내용은 없음. 검찰은 재수사 시작후 비교적 폭넓은 소환조사, 압수수색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으나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소위 '윗선'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진경락 전 과장의 이동식하드디스크 등 검찰의 압수수색자료의 일부에서 여야 의원 및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자료가 추가로 발견되고, 언론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라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VIP)에 대한 절대 충성 친위조직이 움직였음이 확인되었음.
-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음. 새누리당의 전·현 정권 물타기 구도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쟁점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검찰의 재수사도 이 대통령과 민정수석실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함구하고 있던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대국민 사과)를 비롯하여 불법민간사찰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함.
-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으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함.

3) 세부과제

-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부활 이후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된 사람 및 단체들은 누구인지 밝히고 사찰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공개해야 함. 또한, 정부가 사찰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도 조사해야 함.
-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실행하는 자, 민간인 사찰 결과를 보고하거나 보고받는 자를 포함한 집행체계 및 보고체계를 밝혀야 함. 특히, 최근 폭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 적시된 청와대 비선조직의 실체가 밝혀야 함. 아울러 이 비선조직의 권력남용 행위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외에 다른 조직(예컨대 기무사)이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함.
-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민간인 사찰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사찰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보고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았는지 규명해야 할 것임.
-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및 핵심 증인들에 대한 입막음 시도와 관련하여,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자들은 누구인지, 이 사실이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입막음 시도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등이 확인해야 함.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와 구성 그리고, 민간인불법사찰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을 밝혀야 함. 사찰의 대상에는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판한 여당의원들이 포함되었음. 사찰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운영에 관여했는지와 사찰보고를 받았는지 확인 되어야 함.
- 2010년 검찰 수사의 문제점, 소위 '영포회' 관련 인사들의 민간인 사찰 개입 의혹, 공직윤리지원관실 외에 기무사 등의 민간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밝히고, 민간인 사찰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도 대해서도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4) 청문회·국정조사의 주요 증인·참고인 명단 및 관련 의혹

※ 핵심 증인 중심으로 추린 명단으로 이후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 있음.

① 증인 : 총 35명

이름	당시직위	사유	비고(현직책)
이명박	대통령	○민간인 사찰 지시 또는 사전 인지 의혹	대통령
정정길	대통령실장 (2008.06~2010.07)	○청와대 비선조직 구성 및 지휘 의혹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2010.07~2011.12)	○입막음을 위한 금품제공 의혹	새누리당 대선예비후보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 (2009.09~2011.08)	○민정수석실의불법사찰및증거인멸개입의혹/2010년검찰수사개입의혹	법무부장관
정동기	민정수석비서관 (2008.06~2009.07)	○민정수석실의불법사찰및증거인멸개입의혹	법무법인 바른 고문 변호사
김진모	민정수석실민정2비서관 (2009.09~2012.02)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의혹 / 2010년 검찰 수사 개입 의혹	서울고검 검사
이강덕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 (2008.3~2009.3)	○민정수석실의불법사찰및증거인멸개입의혹	해양경찰청장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2009.08~)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입막음을 위한 금품제공 의혹	공직기강비서관
이영호	사회정책수석실고용노사비서관 (2008.02~2010.07)	○청와대 비선조직 실체 규명 증거인멸 지시 및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구속 기소 (재판중)
조재정	사회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	○불법사찰 관여 및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사회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
최종석	사회정책수석실 행정관	○증거인멸 지시 및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구속 기소 (재판중)
이상휘	홍보기획비서관 (2010.07~2012.01)	○입막음을위한금품제공의혹	
박영준	청와대기획조정비서관(2008.02~2008.06) 국무총리실 국무차장(2009.01~2010.08)	○청탁받고 민간기업 사찰 지시한 의혹 /청와대 비선조직 지휘 의혹	계명대학교 특임교수
이인규	국무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		구속 기소 (재판중)
류충렬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	○사찰 대상, 방법 등 민간인 사찰 현황 ○공직윤리지원관실 운영 실태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보고 및 지휘체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
진경락	국무총리실기획총괄과장	○청와대 비선조직의 실체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구속 기소 (재판중)
장진수	국무총리실주무관		불구속 기소(재판중)
김충곤	국무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점검1팀장		구속 기소 (재판중)

원충연	국무총리실공직윤리 지원관실점검1팀(조 사관)	<p>(2010년 수사 당시 지휘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축소수사 의혹 ○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민정수석 실과 검찰의 수사조율 의혹 	구속 기소 (재판중)
김화기	국무총리실공직윤리 지원관실점검1팀(조 사관)		서초경찰서 근무
권중기	국무총리실공직윤리 지원관실점검1팀(조 사관)		경찰서 청 문 감 사 관 (서울지역)
이귀남	법 무 부 장 관 (2009.09~2011.08)		
김준규	검 찰 총 장 (2009.08~2011.07)		김앤어소시 에 이 션 스 대표변호사
노환균	서 울 중 앙 지 검 장 (2009.08~2011.01)		법무연수원 장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09.08~2011.08)		청주지검장
오정돈	서울중앙지검형사1 부 장 (2009.08~2010.07)특 별 수 사 팀 장 (2010.07~2010.08)		서울북부지 검 차장검 사
장기석	형사1부부장(수사진)		사법연수원 교수
신지용	검사(수사진)		대검 연구 관
최호영	검사(수사진)		대 검 찰 청 검사
배용찬	검사(수사진)		대 구 지 검 포항 지청 부장검사
박흥주	검사(수사진)		
이상득	국회의원 (18대)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 관여 의혹, 사전 인지 또는 개입 의혹	전 국회 의원
이동걸	고용노동부장관정책 보좌관	○입막음을 위한 금품제공 의혹	
이우현	공인노무사	○입막음용 자금 출처 및 사용처 의 혹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 부장
서유열	KT 홀고객서비스부 문 사장(2010.01~)	○ 증거인멸 과정에 사용된 차명폰 제공 외 입막음용 자금 제공 등 추가 관여 의혹	KT 홀고객 서비스부문 사장

② 참고인 (사찰피해자 다수)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김종익 외 피해자 다 수	전 KB한마음 대표 등	○ 사찰피해증언, 정부의 사과 및 보 상여부	사찰피해자

5) 관련 기관 및 소관 상임위

- 대통령실(민정수석실 등),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 19대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6) 담당 부서

- 민간인 불법사찰 비상행동 상황실 02-6712-5281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문책을 위한 청문회

1) 개요

- KBS, MBC, YTN 등 언론사의 낙하산 사장 임명 등을 통한 언론장악의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2) 청문회 취지

-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조중동 방송에 특혜를 몰아 주어 여론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KBS, MBC, YTN, 연합뉴스에 MB특보 출신 및 MB측근을 사장으로 임명하여 비판적인 보도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언론인들을 전보조치, 징계 하는 등 방송의 공적 역할을 훼손한 책임자를 추궁하여야 함
- MB정권 초기 최시중, 나경원, 유재천 등 여권의 중요 인물과 한나라당 의원 및 관련자들이 모여 KBS대책회의를 하는 등 공영방송 장악의도가 일부 드러났으나 이후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없었음. MBC사장의 경우도 “청와대 쏘인트 발언” 등을 통해 방송장악의 일면이 드러나긴 하였으나 실제적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었음. 뿐만 아니라 KBS새노조에 의해 민간인불법사찰 보고서에 언론장악을 위한 불법사찰 현황도 드러났으나 실제적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언론장악에 가담한 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따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3) 세부 과제

- 2008년 MB정권 초기에 불거졌던 KBS대책회의 진상규명
- 정연주사장 해임, 이후 김인규사장 선임 등의 과정에 최시중 등 개입한 과정 규명
- YTN돌발영상 PD교체 및 구본홍 사장, 이후 배석규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권의 개입 과정 규명
- MBC쏘인트 발언의 진상 규명 및 이후 비판 프로그램 폐지, 비판 언론인

징계 등의 과정

4) 청문회(국정감사)의 주요 증인 및 참고인

① 증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장악 총지휘	전직/구속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KBS정연주사장해임 등 언론장악	전직
정정길	대통령실장	KBS정연주사장해임 등 언론장악	전직
신재민	문화관광부차관	언론장악 책임	전직/구속
김우룡	방문진이사장	청와대썬인트발언	전직
김광동	방문진이사	MBC 친정부체제 구축, 비판프로그램 축출 등	전직
차기환	방문진이사	MBC 친정부체제 구축, 경영진 압박, 비판프로그램 죽이기 등	전직
최홍재	방문진이사	MBC 친정부체제 구축, 비판프로그램 축출 등	전직
남찬순	방문진이사	MBC 친정부체제 구축, 비판프로그램 축출 등	전직
권혁부	전KBS이사	KBS에 16년 만에 경찰병력투입 요청 등 정연주 사장 해임 및 시사투나잇 폐지 발언 등 비판프로그램폐지 주도	현방송통신심의위원
박만	전KBS이사	KBS에 16년 만에 경찰병력투입 요청 등 정연주 사장 해임	현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배석규	현 YTN 사장	임명과정과 파업 관련 책임 추궁	현직
구분홍	전 YTN 사장	임명과정과 돌발영상 징계 관련 책임 추궁	전직
원충연	총리실 조사관	언론사 불법사찰 등	구속

②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정연주	전 KBS 사장	강제 해임과정 규명	전직
엄기영	전 MBC 사장	정부 비판프로그램 폐지 등	전직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	언론 장악 피해 증언	
정영하	MBC노조위원장	언론 장악 피해 증언	해직
김현석	KBS새노조위원장	언론 장악 피해 증언	
노종명	YTN전노조위원장	언론 장악 피해 증언	해직
김종욱	YTN현노조위원장	언론 장악 피해 증언	

5) 관련 기관 및 상임위

- 관련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위 , KBS이사회 등
- 관련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6)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3.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

1) 개요

- 정리해고의 부당성,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한 사측의 책임과 실직자 지원대책의 실현성 및 지도감독 현황 등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규명 함.

2) 청문회 취지

-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3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그 동안 무려 22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해고의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회적 치유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22명의 죽음을 통해 확인되었듯 쌍용차 사태는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그런 만큼 청문회 개최를 통해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타살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3) 세부 과제

-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정부는 2009년 정리해고 당시 공권력 투입이라는 강제진압 이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노사합의 이후에도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부실하였고, 노사협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정부의 지도감독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청문회를 통해 22명의 죽음과 쌍용차 사태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함.
- 쌍용자동차는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대상이나 무급휴직자 우선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근에는 신규채용 공고까지 내는 등 이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사회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음. 그런 만큼 쌍용자동차 사측에 대해서는 정리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 노사합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

4) 청문회(국정감사)의 주요 증인 및 참고인

① 증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이유일	쌍용자동차 대표이사	정리해고 정당성 여부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	현직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쌍용차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 해고노동자에 대한 지원 대책 및 실효성 쌍용차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	현직
정언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쌍용차 노사합의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책임	현직

②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정혜신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 심리치유프로젝트 '와락' 운영	해고노동자 심리상태 점검	현직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	해고노동자들의 현재 상황 및 요구사항	현직

5) 관련 기관 및 상임위

- 관련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 관련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6)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4. 저축은행 사태 재발방지 및 금융당국의 정책책임 규명 청문회

1) 개요

-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재발방지와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2) 청문회 취지

-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시작된 소위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금융 감독과 금융기관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음. 부실PF 대출과 분식회계, 금융감독 기관에 대한 각종 로비, 영업정지 전 부당 예금인출 및 자산 매각, 고위험 상품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꼬리를 물고 제기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었음. 더 이상 영업정지가 없다고 하고도 2012년 추가로 4개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있었음.
-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정·관계로비도 문제였지만, 지난 금융정책에 더 큰 책임이 있음. 국회가 지난 국정조사를 소모적 정쟁으로 흘려보내고 어떤 결론도 맺지 못하고 끝을 낸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따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3) 세부 과제

- 2005년 9월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미 저축은행 PF대출의 부실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 재정경제부가 법인에 대한 여신한도규제를 폐지해 저축은행이 과도하게 PF대출에 집중하면서 현재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
- 이번 청문회에서는 △2008년 4월 '대주단 협약'으로 인해 자기자본 대비 PF규모가 큰 저축은행의 채권행사가 지연되면서 부실규모가 더 확대되게 된 점, △2008년 8월 부실저축은행을 우량저축은행에 M&A 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을 저축은행 전반으로 키운 점, △2008

년 12월 저축은행 PF대출의 부실이 현실화되었음에도 정부가 공적자금을 적시에 투입해서 부실을 털어내지 못하고,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3년간 매각토록 해 사실상 부실을 숨기게 한 점도 규명되어야 함.

- △2008년 부실저축은행을 M&A시키고, 캠코에 PF부실채권을 넘길 정도로 저축은행 전반에 부실이 상당히 심각했음에도 후순위채 발행을 정지하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점, △ 2011년 2월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영업정지를 신청하도록 해 부당 예금인출이 일어날 유인을 제공한 점에 대해 분명히 규명해야 함.

4) 청문회(국정감사)의 주요 증인 및 참고인

① 증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진념	재경부장관 (2000.8.-2002.4.)	2001년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명칭 변경	KPMG Korea 고문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2001.4.-2004.1.)	2001년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명칭 변경	보고펀드 대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2000.8.-2003.3.)	2001년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명칭 변경	법무법인 세종 고문
한덕수	재경부장관 (2005.3.-2006.7.)	2005년 8·8클럽 선정과 동일인 여신한도 폐지	주미한국대사관 대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2004.8.-2007.8.)	2005년 8·8클럽 선정과 동일인 여신한도 폐지	尹경제연구소
박대동	금융감독위 감독정책1국장 (2004.1.-2007.3.)	2005년 8·8클럽 선정과 동일인 여신한도 폐지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광우	금융위원장 (2008.3.-2009.1.)	2008년 부실PF채권 자산 관리공사 매각	국민연금 이사장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 (2008.3.-2009.12.)	2008년 부실PF채권 자산 관리공사 매각	파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2008.3.-2011.3.)	2008년 부실PF채권 자산 관리공사 매각	퇴직
김석동	금융위원장 (2011.1. 취임)	2011년 부실 PF대출 사후 정산 기간 연장	현직
신제운	금융위 부위원장 (2011.3.-2011.9.)	2011년부실 PF대출 사후 정산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2011.3. 취임)	2011년 부실 PF대출 사후 정산 기간 연장	현직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2011.4. 취임)	2011년 부실 PF대출 사후 정산 기간 연장	현직

②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장	저축은행 배임 횡령 책임	전직/구속

5) 관련 기관 및 상임위

- 관련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 관련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6) 참여연대 담당부서

- 시민경제위원회 02-723-5052

5. 론스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1) 개요

- 산업자본이었던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의 지배 주주가 된 경위, 주요 시기마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판단이 유보된 이유, 2011년말~2012년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의 합법성 판단 등 론스타 사태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2) 청문회 취지

-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매각명령을 부과 받기 까지 일련의 기간 중 적어도 3 번의 중요한 시점에서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음.
- 2003년 9월 26일 론스타의 동일인에 대해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의결된 시점에서는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를 바탕으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닌 자(금융자본)로 판단했으나, 국내의 스타타워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미국의 레스토랑 체인 등 론스타가 금융위에 승인신청 시 동일인이라고 밝혔던 것에서 누락된 비금융주력자 회사를 포함하면 자산을 기준으로 비금융회사 자산 총계가 2조원을 상회해,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가 될 뿐 아니라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승인신청서에 기재한 투자펀드들은 비금융업회사로 볼 수 있어 이들의 자본비율이 전체의 25%를 상회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밖에 볼 수 있음.
- 2003년 10월 29일 론스타의 투자구조 변경 시점에서는 2003년 10월 7일 일본 골프장 회사인 지산(地産)이 론스타에 흡수되어 비금융회사 자산총액이 더욱 증가했을 뿐 만 아니라 자본비율 역시 투자구조 변경으로 론스타에서 제외된 Lone Star Fund IV (Bermuda), LP의 자본총액이 468,412 백만원에 달해, Lone Star Fund IV (Bermuda), LP 대신 새로 편입된 5개 회사가 명백히 금융회사이고 동시에 상당한 자본총액을 보유한 회사가 아니라면, 비금융주력자의 자본총계가 25%이하로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따

라서 해당시기에도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음.

- 2011년 11월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PGM Holdings, KK가 론스타의 동일인 임이 확인되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이 드러남. 이는 이명박 정부도 인정하는 바임.
-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적어도 PGM Holdings, KK를 소유한 시점에서 법문상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으나,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고 8년 동안 수조원의 이익을 챙긴 채 한국을 떠나게 함. 더불어 여전히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고, 외환은행 주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3) 세부 과제

-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는가, 금융당국의 승인 처분은 적법했는가, 승인 처분 자체가 법률적으로 존재하는가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함.
- 금융당국은 3번의 주요 고비에서 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하지 않았는지를 철저히 따져야 함.
-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당시 금융당국의 단순지분매각 명령은 적법했는가도 짚고 넘어가야 함.
- 론스타측 선임 이사들의 이사 자격과 선임은 적법했는가도 확인해야 함.
- 또, 최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가조작 잘못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에 관련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것과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에서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 청문회의 주요 증인 및 참고인

① 증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김석동	금융위원장 (2011.1. 취임)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사 불이행	현직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2011.9. 취임)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사 불이행	현직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 (2010.5.-2012.2.)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사 불이행	현 금융정책국장
성대규	금융위 전 은행과장 (2011.1. -2012.2.)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사 불이행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파견

②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래리 클레인	전 외환은행장 (2009.4.-2012.2.)	외환은행 인수 경위·경영상의 행위	
엘리스 쇼트	전 외환은행 비상임이사 (2003.11.-2011.12.)	외환은행 인수 경위·경영상의 행위	
마이클 톰슨	전 외환은행 비상임이사 (2003.11.-2011.12.)	외환은행 인수 경위·경영상의 행위	
유회원	전 외환은행 비상임이사 (2003.11.-2011.12.)	외환은행 인수 경위·경영상의 행위	

5) 관련 기관 및 상임위

- 관련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관련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6) 참여연대 담당부서

- 시민경제위원회 02-723-5052

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실효성 가리기 위한 제주해군기지사업 국정조사 실시

1) 개요

- 주민 동의 없이,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그동안 제기되어 온 민주적 절차, 환경, 설계 오류, 이중 협약서 체결,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한 제반적 문제점들과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마을 공동체 파괴와 인권 침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국정조사가 필요함. 모든 측면의 절차적 하자과 문제점들이 해명, 해소될 때까지 기지건설을 중단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해군기지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2)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취지

- 애초 입지 후보지도 아니었던 강정마을이 제주해군기지부지로 선정되면서부터 강정마을 공동체는 파괴되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벌금과 연행으로 전과자가 되는 등 경찰의 봉쇄 속에 강정주민의 평화로운 삶이 파괴되고 있음.
-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해군기지 일방적 공사강행에 비폭력적으로 저항해오고 있으나 해군과 정부 측은 대화보다 강경대응을 하고 있음. 2010년 공사착공 이래 무려 500명 이상이 체포됨. 경찰은 제주해군기지 인근 주요 거점에 대해서는 집회 자체를 사전에 금지함으로써 계엄령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
- 강정마을에서 강행되는 해군기지 공사는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음. 강정주민 1900여명 중 단 87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해군기지 입지선정이 결정됨.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게 진행됐고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제주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됐음. 문화재청은 공사 과정에서 제주도 최고의 문화유산이 발견된 공사부지 내에서 부분공사가 가능하다는 비상식적 판단을 내림.
- 정부와 해군이 당초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아닌 군항위주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이중 협약서 체결,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 접안이 불가능한 설계, 실제 전세계에 6-7척밖에 존재하지 않는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접안을 상정한 경제적 효과 부풀리기 등 문제점들이 제기됐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음.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 항만구역에 대해서조차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항만출입허가권을 관할 부대장이 행사한다고 정함으로써 지금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군항으로 건설되고 있음이 드러남.

- 국가가 2012년 사업집행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예산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제주해군기지사업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국방부의 문민통제 원칙에 반하는 행위임.

3) 세부 과제

- 모든 측면의 절차적 하자과 문제점들이 해명, 해소될 때까지 기지건설 중단, 국정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해군기지사업 원점 재검토
-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인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의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강정 앞바다의 환경 훼손되고 있음. 해군과 시공사측은 오탁방지막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파 및 준설 공사 등을 진행함. 해군과 시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항 조사
- 강정마을 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 조사
- 매장문화재가 발굴되었음에도 위법적으로 부분공사를 승인하고 시행한 문화재청 처분 위법성 조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전제가 되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 등이 과연 타당성 조사
- 강정마을 구림비 바위 인근의 절대보전지역 해제나 천연기념물 442호인 강정앞바다에 대한 형상변경 허가 타당성 조사
- 제주도를 지원하기 위해 1조 7백억 상당의 지원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5천

8백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정부 측 발표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

-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사업은 주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 없이 강행되고 있음. 민주적 절차 준수와 주민 의견 경청과 수렴은 민주사회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강정마을과 범섬 인근의 천혜의 자원 환경에 해군기지 건설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심각한 환경 피해 및 훼손에 대한 영향평가 추가 실시
- 18대국회 야5당 진상조사단 권고사항 이행 유무 검증

4)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주요 증인 및 참고인

① 증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김황식	현 국무총리	항만설계상 오류 검증 관련	
한승수	전 국무총리	제주해군기지 선정 및 추진 과정 관련	
박재완	현 기획재정부 장관	제주해군기지 예산 관련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 기본협약서 이종 작성 등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 (2010.12~)	제주해군기지 전략적 필요 등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2009.08~2010.12)	제주해군기지 전략적 필요 등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2008.02~2009.0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 기본협약서 이종 작성, 행정명령 취소권 발동 등	
최윤희	현 해군참모총장 (2011.11~)	해군기지 추진 관련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 (2010.03~2011.10)	해군기지 추진 관련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2006.11~2008.03)	해군기지 부지로 강정마을 선정 확정 및 추진 등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2009.05~2011.11), 4,5대 단장, 해군대령	해군기지 설계오류 책임 및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 매립면허 부관조항 위반, 소음진동규제법,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 혐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 기본협약서 이종 작성 등	
정인양	제주해군기지사업단 (2011.12~, 6대 단장), 해군준장	해군기지 설계오류 책임 및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 매립면허 부관조항 위반, 소음진동규제법,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	

		협의 등	
김찬	현 문화재청장 (2011.09~)	중덕 삼거리 부근, 문화재 발굴조사지역에 해군의 펜스 설치 공사강행 관련 문화재 보호 직무유기 등	
이건무	전 문화재청장 (2008.03~2011.02)	중덕 삼거리 부근, 문화재 발굴조사지역에 해군의 펜스 설치 공사강행 관련 문화재 보호 직무유기 등	
최광식	전 문화재청장 (2011.02~2011.09)	중덕 삼거리 부근, 문화재 발굴조사지역에 해군의 펜스 설치 공사강행 관련 문화재 보호 직무유기 등	
조현오	전 경찰청 청장 (2010.08~2012.04)	강정마을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과잉 대응 등	
정철수	현 제주지방경찰청 청장 (2011.11~)	강정마을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과잉 대응 등	
이동민	현 서귀포경찰서장	강정마을 불법 체포 및 과잉 대응, 집회 금지 처분 결정 등	
강호준	전 서귀포경찰서장	강정마을 불법 체포 및 과잉 대응	
김학철	전 서귀포경찰서장	강정마을 불법 체포 및 과잉 대응	
송양화	전 서귀포경찰서장	강정마을 불법 체포 및 과잉 대응	
여인태	현 서귀포해양경찰서장	문정현 신부 추락 관련 과잉 대응	
우근민	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2010.7~)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 매립면허 부관 조항 위반, 소음진동규제법,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에 의한 직무유기 등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2004.06~2010.06, 34대, 35대 연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졸속진행,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체 졸속 강행 등	
양대성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도의회에서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체 졸속 강행 등	
김재봉	현 서귀포시장 (2012.01~)		
고창후	전 서귀포시장	농로 등 2필지를 용도폐기 권고 관련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결정 관련	
양병식	현 제주특별자치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 단장	크루즈 입출항 검증 관련	

②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강동균	현 강정마을 마을회장 (2007.08~)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및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해군 및 경찰의 과잉 대응 진술	
윤태정	전 강정 마을회장 (~2007.08.10)	2007년 4월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제출	
김정기	전 강정마을 어촌계장	2007년 4월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만장일치 통과 모의	
고건일	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대책위원장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및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해군 및 경찰의 과잉 대응 진술	
이태호	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및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해군 및 경찰의 과잉 대응 진술	
송강호	신학박사	공사저지를 위한 활동 중 경찰에 구타당함	
문정현	신부	서귀포해양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삼발이 아래로 추락	
양운모	영화평론가	공사저지를 위한 활동 중 경찰에 구타당함	
이윤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국방부가 의뢰한 시뮬레이션 실시	
최찬문	제주대 해양과학대 교수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단장	
이병걸	제주대 해양과학대 교수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참여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참여	
전준수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총리실의 제주해군기지 대형 크루즈 선박 입·출항 가능여부 기술검증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한국해양대 교수	해군 측 민간전문가	
공인영	한국해양연구원 박사	해군 측 민간전문가	
황인섭	(주)데코컨설팅 대표	해군 측 민간전문가	

5) 관련 기관 및 상임위

- 관련 기관 :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해군
- 관련 상임위원회 : 국방위원회

6)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7. 천안함 침몰 의혹 규명을 위한 초당파적 진상조사

1) 개요

-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해상에서 침몰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고, 국민과 주변국들이 신뢰할만한 조사결과도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음. 폭침설을 믿는 이들이든 정부 조사결과에 의문을 가진 이들이든 모두가 신뢰할만한 진상조사가 필요함.

2)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취지

- 천안함 침몰 사건은 많은 의혹을 남긴 채 군기밀주의로 인해 아직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음. 참여연대가 제기한 12개항의 정보공개청구는 거부되었고, 천안함 절단 침수 관련 TOD 동영상도 은폐됨. 해외조사단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들과 정보비공개 각서를 체결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음. 조사과정 내내 정부와 군의 말바꾸기가 계속되면서 정부 발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함. 정부가 결정적 증거라고 제시한 것들에 대한 치명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천안함 폭침설은 국민적 신뢰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도 획득하지 못했음. 정부와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물'에 대한 조사에 5개국(한·미·영·호주·스웨덴) 전문가들은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한다'는 수준에 불과함. 중국/러시아 등의 주변국도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음.
-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는 정부 초기 조사과정의 정략적 접근태도, 국회 검증에서의 정략적 비협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함. 사건 발생 두 달이 채 안된 상태에서, 심지어 결정적 증거물이라는 어뢰부품이 발견된 지 6일만인 5월 21일, 합조단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날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운동 개시일이었음. 지방선거가 한창인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자극적인 방법으로 경제봉쇄는 물론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한 5·24조치를 발표함.
- 국회에 구성된 천안함 특위의 운영도 정략적 이유에서 부실하고 무책임하

게 이루어졌음. 야당 의원들의 특위소집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단 두 차례만 열린 채 6월 27일 시한이 마감되었음. 정부가 미 대사관에 제공한 200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음.

- 천안함의 진실을 검증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초인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하기 위해 필요함. 한국사회에서 이 사건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는 금기시되어 왔고 천안함의 진실을 다루려던 시민사회단체, 과학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당했음.
-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의문점과 정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5.24 조치로 인해 어렵게 쌓아왔던 남북간 신뢰는 회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남북 모두에게 손실을 초래했음. 5.24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이거나 다름없음.

3) 세부 과제

-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답해야 하며, 군 주도 조사단의 철저한 정보통제와 부실한 조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초정파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통한 천안함 사건 진상에 대해 조사해야 함. 나아가 정부 조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함.
- 사고 당일 천안함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폭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과연 증거능력을 가진 것인지,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는 잠수정이 사건 전후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 기본적 정보공개.
- 물기둥, 열상수신동영상(TOD) 등 사건진상과 긴밀히 연관된 쟁점에 대한 말바꾸기가 참여연대가 확인한 것만 23건 이상임. 말 바꾼 것에 대한 의혹 규명.
- 어뢰부품과 천안함 본체에서 폭발재(산화알루미늄)가 발견되었다는 조사결

과에 대해, 과학자들로부터 해당물질이 폭발재가 아닌 침전물(황산염알루미늄수화물)에 불과하며 최종보고서 어디에도 폭발 흔적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는 과학적 반론에 대한 검증.

4) 국정조사의 주요 증인 및 참고인

① 증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최원일	천안함 함장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징계받음	전직
김동식	제2함대 사령관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징계받음	전직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징계받음	전직
황중선	합참 작전본부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징계받음	전직
정운찬	국무총리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전직
김태영	국방부 장관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전직
현인택	통일부 장관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전직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전직
장수만	국방차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이상의	합참의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김중련	합참차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임응순	합참 정보참모부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김학주	합참 작전참모부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박정이	합조단 공동단장	합조단	
윤덕용	합조단 공동단장/KAIST 명예교수	합조단	
이치의	합조단 부단장	합조단	
문병옥	합조단 대변인	합조단	

②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김00	인천-214호 선장	천안함 승조원 구조활동	
문00	인천-227호 선장	천안함 승조원 구조활동	
김00	대평호 선장	1번이라 쓰인 어뢰 부품 발견	
장00	해덕호 선장	천안함 함미 위치 최초 파악	

이정희	전 국회의원	천안함 두 동강 나는 모습이 담긴 TOD 영상 존재 주장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합조단의 비접촉 근접 수중폭발 결론 반박	
이승환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	합조단의 비접촉 근접 수중폭발 결론 반박	
양판석	캐나다 미네소타대 교수	합조단의 비접촉 근접 수중폭발 결론 반박	
신영식	KAIST 교수	수중폭발 전문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해난구조 및 인양 전문가	
신상철	합조단 민간조사위원	합조단 민간위원으로 참여	
노종면	언론3단체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	천안함 침몰 과정 전반적 모니터링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천안함 침몰 과정 전반적 모니터링	
윤종성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옥년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차재훈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곽병혁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최민성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태형	국방홍보원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정희선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이중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유훈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영주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동환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민지숙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양승주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박성재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박정수	합참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조일생	해군본부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김성백	해군본부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이용섭	해군본부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이재혁	방위사업청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김종현	한국선급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정정훈	한국기계연구원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안진우	ADD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박상철	현대중공업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주영렬	삼성중공업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조상래	울산대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노인식	충남대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이기봉	합참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김기준	합참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한상철	합참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김인주	합참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류상용	합참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김대영	ADD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황을하	ADD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김학준	ADD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이근득	ADD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이재명	ADD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신영식	KAIST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김동형	민간연구소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조광현	예비역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손기화	합참	합조단 정보분석분과	
서강흠	합참	합조단 정보분석분과	
이용국	한국해양연구원	합조단 정보분석분과	
김옥수	국립해양조사원	합조단 정보분석분과	
권태석	중령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중령 최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소령 김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대위 박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대위 이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중위 김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중위 박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중위 정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고영재	해경 501 함장	천안함 승조원 구조작업	전직
유종철	해경 501 함정 부함장	천안함 승조원 구조작업	전직
성명비공개	물기둥 목격 백령도 초병	물기둥(섬광) 목격자	전직
	백령도 해병 6여단장	백령도에 설치된 TOD 성능 보고	
토마스 에클스	합조단 미국측 단장	합조단 참여	

5) 관련 기관 및 상임위

- 관련 기관 :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 관련 상임위원회 : 국방위원회

6)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참여연대 자료집 제2012-02호

19대 국회, 시급한 입법과제 및 청문회 과제

발행일 2012. 06. 12

발행처 참여연대

담당 이재근 시민감시1팀장 02-725-7104 forr2018@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2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ARS후원 060-800-5300

주소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